

현안분석 2006-
법령용어 □□

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소병천·강현철

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Study on Purification and Explanation of Terminolog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연구자 : 소 병 천 (아주대 법대 교수)
So, Byung-Chun
강 현 철 (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6. 8.

국 문 요 약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은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법 자체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에서 다루지 아니하였던 분야에서의 국제법의 발전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국제환경법 영역이다. 국제환경법은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의 총체이나 최근의 경향은 환경보호 뿐 아니라 환경자체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무역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시장경제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법은 대기, 해양, 하천, 자연동식물 보호, 유해화학물질 규제, 생명공학과 같이 그 분야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법규범 지식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의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다. 국제환경법 자체가 순수한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도 사실이나 과학적, 윤리적, 및 경제적 접근방법 그리고 이들의 통합적 고려가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이처럼 복잡다양한 국제환경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협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러 전문 용어를 이해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소위 연성법을 포함하여 20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구속력 있는 협약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국제환경협약에서 발견되는 용어 속에는 국제법의 일반적인 용어 외에도 국제환경법에서 전문화된 용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제환경법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없어 국제환경법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의 용어를 정리하여 설명해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 주요한 선언 및 협약을 중심으로 협약에 등장하고 있는 일반용어 및 전문용어를 총체적으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비록 이러한 방식이 국제환경법 전 분야에 이르는 방대한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연구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기존의 법률용어해설집이 주로 채택하여 온 방식이고 본 해설집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도 용어를 찾기가 손쉽다는 점에서 국제 환경협약 및 국제관습법 그리고 일반 강학상의 용어를 포함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해설을 한다. 연구의 범위는 대표적인 연성법인 1972년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법원칙 선언, 리우선언(Rio Declaration)에서 대표적 국제환경협약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 사막화방지협약, 환경영향평가 관련 에스푸협약, 물새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분에 관한 바젤협약, 환경관련 남극조약 등을 다루며 비록 이들 국제적 선언이나 협약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국제환경법의 기본적인 법률용어 및 원칙들 역시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었다.

주제어 : 국제법, 국제환경법, 용어 해설, 개념규정, 환경 전문용어

Abstract

International law has played in a significant role in globalizing international community; moreover, it has rapidly developed and fragmented. One of good example i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legal bodies of protecting environment, are integrating to economic element including a market approach such as emission trading systems. Nowadays, environment itself is the goods in international market system.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of thes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various approaches such as economic, technical, and scientific approaches with its own terminologies. It is said there are more than 200 treaties including soft laws, and Korea has signed and ratified to around 50 conventions. It is found many terminologies which have special terms and different uses in these conventions; and these are make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ventions themselves.

This study explor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legal terminologies. It takes a manner to explain the terminologies with Korean alphabetical order. Even though it is not enough to cover all area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it is an ordinary approach in this kind of studies and easy for users to find the terms. This study includes soft laws such as 1972 Stockholm Declaration, 1982 Nairobi Declaration, World Charter for Nature, 1992 Rio Declaration and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its Kyoto Protocol, Basel Convention and UN Biodiversity Convention. Moreover, it also includes general principles and terminology which is not found in specific declaration or conventions.

Key Words : International Law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xplanation of terminology, Terms provisions, Environmental uses.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I. 연구개요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1) 연구의 방법	10
(2) 연구의 범위	11
II. 용어 해설	13
III. 결 어	125
▣ 부록 : 용어해설 색인	129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1970년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선진국 중심으로 많은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문서들이 등장한 이래 국제환경법은 가장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국제법의 분야 중 하나이다. 국제환경법은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의 총체이나 최근의 경향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환경자체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무역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시장 경제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법은 대기, 해양, 하천, 자연동식물 보호, 유해화학물질 규제, 생명공학, 과 같이 그 분야가 날로 다양 해 지고 있다. 이처럼 국제환경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법규범 지식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20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있다고 하며 소위 연성법(Soft laws)을 포함한다면 국제환경법은 어떠한 분야보다도 많은 국제문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구속력 있는 협약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국제환경협약에서 발견되는 용어 속에는 국제법의 일반적인 용어 외에도 국제환경법에서 전문화된 용어들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환경규범이라는 특성상 과학적 용어 및 기술적 용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환경협약을 포함한 국제환경법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환경법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없어 국제환경법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1. 연구개요

데 장애가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의 용어를 정리하여 설명 해설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한 용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여 여러 문장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용어가 매 문장의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는 것은 자칫하면 해당 용어의 의미를 오역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뿐 만 아니라 국제환경법 용어의 보다 평이하고 쉬운 해설은 국제법 전공자 외의 일반인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제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국제환경협약에서 발견되는 과학적 용어 및 기술적 용어들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국제환경협약에서 동떨어진 또는 어색한 용어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법 용어의 일반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주요 국제법 용어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한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환경협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국제관습법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를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유사용어 또는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교하여 설명한다. 또한 간혹 국내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오역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번역과정에서 다른 용어들로 통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올바른 용어 선택의 차원에서 학문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 사용되는 일반용어 및 전문용어를 해설한다. 본 연구의 편성상의 방법에 있어 세 가지 방법이 검토되었다. 첫째, 연구범위 내의 협약별로 용어를 정리하는 방법과 둘째, 국제환

경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별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환경법상의 용어를 총체적으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해당 협약에 있어서 체계적인 용어정리로 인해 협약 별 이해를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약별로 단어를 정리하다보니 해당 조약의 해설집과 같아지는 점과 전체적인 체계가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두 번째 방법인 국제환경법의 분야별 용어 정리는 편제가 용이하고 연구방법은 손쉬우나 본 연구가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제한이 있어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 방법 역시 국제환경법 전 분야에 이르는 방대한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연구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기존의 법률용어해설집이 주로 채택하여온 방식이고 본 해설집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도 용어를 찾기가 손쉽다는 점에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용어를 채택하여 해설하여 용어해설이라는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고 나아가 추가로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환경협약 및 국제관습법 그리고 일반 강학상의 용어를 포함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해설을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 주요한 선언 및 협약을 중심으로 협약에 등장하고 있는 용어를 해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제환경 선언 소위 연성법(soft laws)들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법원칙 선언, 리우선언(Rio Declaration), 요하네스버그 선언(Yohanesbeg Declaration)이며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들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3개 의정서(몬트리올, 런던, 코펜하겐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

I. 연구개요

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 사막화방지협약, 환경영향평가 관련 에스푸협약, 물새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분에 관한 바젤협약, 환경 관련 남극조약 등이다. 비록 이들 국제적 선언이나 협약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국제환경법의 기본적인 법률 용어 및 원칙들 역시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었다. 상기의 조약들을 조약 영어본 원문과 국내에서 번역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국내자료는 외교통상부와 법원행정처 등 정부부처에서 발간한 자료와 일반 기관 및 학자들이 번역한 조약집을 비교하였다.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이에 달리 번역된 용어가 있는 경우 추출하여 통일적인 사용을 위해 용어를 선택 제안하였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개념 해설에 국한하였다.

II. 용어 해설

▣ 깃댐(Gut Dam) 사건

1950년대 초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댐건설을 둘러싼 사건으로 국제 환경책임과 관련 언급되는 사건이다. 본 사건은 1903년 캐나다가 캐나다 영토내의 Adam섬과 미국의 Les Galop섬 사이의 댐을 건설하고 1904년 그 높이를 더욱 확장 한 결과 1951 년과 1952 년 사이의 온타리오호의 수위가 높아져 온타리오호 주위의 미국 주민과 Les Galop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재재판소는 홍수로 인하여 미국시 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 할 책임이 캐나다정부에게 있다고 밝혔다.

▣ 고정오염원(Point source)

생활하수·산업폐수 및 축산폐수처럼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 오염의 원인이 발생하는 곳을 지칭하며 특정오염원, 점오염원, 고정발생원이라고도 한다. 대기오염 역시 그 발생장소가 자동차처럼 이동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는 이동오염원(non-point source)이라고 하며 그 외에 특정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고정오염원이라 한다.

▣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

골격협약이란 협약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필요에 의해 우선적으로 합의를 이룬 범위 내에서만 채택하고 향후의 이행협정에서 추가 보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국제적 합의의 형태이다. 국제환경법이나

II. 용어 해설

국제경제법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큰 골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여 일반적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당사국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 추가의정서 형식으로 보완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3개 추가의정서(몬트리올, 런던, 코펜하겐 의정서) 및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등이 골격협약과 이행협정(implementing agreements) 관계이다.

■ 공공참여의 원칙(Public participation principle)

공공참여의 원칙이란 정부의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투명한 정부의 제고 및 개인의 권리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정부 정책결정 및 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천원리의 하나이다. 리우선언은 원칙10에서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진다.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함.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공공참여는 정책결정의 전과 후로 나누어 정책결정과정 전의 환경행정 정보에의 접근(Access to Information), 정책결정과정 절차에의 참여(Access to Process/Access to decision-making Process), 및 정책결정과정 후 사법심사(Access to Justice)로 나누어 진다.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참여에 대한 국제협약으로는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의 접근,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사법적 접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소위 알후스 협약이 있다.

■ **공해(Public nuisance)**

공해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로 되는 문제 따위를 말한다. 그러나 공해는 민법상 공공방해(公共妨害)의 약자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에는 환경오염과 동의어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의미를 살려 환경법에 있어서는 공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이란 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선진국인 A국이 역시 선진국인 B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하는 데에 투자하거나 양국인 인정하는 법인간 공동사업의 부산물로서 B국에서 저감된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일정량을 자국의 배출 저감량으로 인정하여 계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위 교토 의정서의 3대 메카니즘의 하나로 표현된다.

■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본 원칙은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해 각국이 다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국이 차등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1992년 리우회의에서 형평상의 원칙으로 채택되었다. 공통책임(common responsibility)의 책임이란 국제환경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의무는 공동의

II. 용어 해설

선, 공동의 이익, 인류의 공동관심사로서 동일하지만 환경문제를 야기한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데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차별적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인정하여 개별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이한 역사적 책임 및 상이한 경제구조 및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역사적 책임이 많은 선진국가가 환경문제해결에 더 많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혹자들은 본 원칙이 국제관습법적으로 확립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국가책임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국가책임규정초안은 2001년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국제의무의 내용에 대한 일차 규범(primary rules of conducts)보다는 이러한 1차 규범이 위반될 경우 적용되어야 할 2차 규범(secondary rules of conducts)을 규정한 내용이다. 규정초안은 4개 부 10개 장 5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국가의 국제적 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국가책임의 이행(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특별법(*lex specialis*)과 같은 규정을 포함한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 국가의 국제적 위법행위에서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요소를 행위의 국가 귀속성과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행위들과 국제의무를 위반할지라도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에서는 국제위법행위의 법적인 결과로서 손해배상

(reparation for injury)을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및 사죄(satisfaction)를 규정하고 있다. 제3부: 국가책임의 이행에서는 국가책임의 원용 및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4부 일반조항에서는 특별법, 본 규정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국가책임의 문제, 국제기구나 개인의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국경간 환경영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in a Transboundary Context)

본 협약은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 서명지의 이름을 따 Espoo 협약이라고 약칭된다. 본 협약은 1991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회원국에 의해 체결되어 1997년부터 발효되었다. 본 협약은 UNECE 회원국들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에게 협약 가입이 개방되어 있어 2003년 11월 말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44개국의 회원이 있다. Espoo 협약은 협약체결국에게 자국관할권 내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가져올 초국경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영향에 대해 영향을 받을 국가들에게 통지, 상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협약 제 1 조 제 5 항, 제 2 조 제 3 항, 제 4 항, 제 6 항, 제 3 조 제 1 항, 제 8 항). 본 협약은 타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위와 같은 영향평가를 하여 타국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별도의 부록의 목록에 있는 국경을 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이행은 협약국의 국내환경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환경영향평가법 내에 본 협약의 부록과 유사한 목록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목록의 행위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협약당사국들의 국내환경영향평가법상의 목록이 다 동일 할 수 는 없으

II. 용어 해설

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협약은 만일 자국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따라서 통지의 의무가 없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는 해당국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즉 해당사업이 타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할 사실조사위원회(Inquiry C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협약 제3조 제7항). Espoo 협약은 회원국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국내환경영향평가절차를 반영하였는데 예를 들어 Espoo 협약 상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 할 요소들은 1985년 채택되어 이미 각국가의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위원회 지침 85/337(Council Directive 85/337/EEC,1985)의 요소들과 동일한 것이었다. 또한 Espoo 협정 제2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공공참여의 참여범위에 관한 요건 역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 위원회지침과 크게 상이한 것은 없었다. 본 협약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국내환경영향평가절차에 있어서 내외국민 비차별 조항(non-discrimination)이다. 이 조항은 기존의 국내 환경영향평가법들은 물론 위원회지침에도 없었던 내용이다. Espoo 협약 제3조 제1·2·3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영향을 타국에 야기 할 수 있는 국가는 그 해당 사업의 영향평가절차에 타국민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UNECE의 공식적인 논평 역시 이 조항은 조약당사국이 일정행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국경을 넘어 타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와 국민들은 환경영향평가절차에 있어서 자국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진계획을 타국에 통지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 시점을 자국민에게 통지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그 환경영향평가절차상에 있어서도 공공참여 즉 청

문회의 참여나 공공의견의 개진하는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최종결정시 개진된 의견들을 고려하는데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정부 측에 어느 정도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은 있지만 그 반영정도에 있어서도 자국민이 개진한 의견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의견수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내외국민의 사실상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이 자국 법정에서 원고적격을 당연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참여의 3대 요건인 환경정보청구권, 절차상의 참여권 및 사법심사청구권이 모두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 IUCN)

자연보호 및 천연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되어 조사 연구, 개발활동, 계획 책정, 정책제언을 하는 국제적 NGO로서 IUCN 또는 World Conservation이라는 이름으로도 지칭된다. IUCN은 스위스자연보호연맹(Ligue Suisse pour la Protection de la Natur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ame, Fish & Conservation Commissions, 및 Congress of Zoology 등의 유럽의 영향력 있는 민간단체의 제안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1913년 17개 국가(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등이 스위스 베른에서 모여 국제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던 본 논의는 1935년 국제자연보호사무소(Internation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Nature)라는 NGO의 창설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단체와 과학자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적 환경문제를 다룰 국제적 조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자 1947년 스위스 브루

II. 용어 해설

넨(Brunnen)에서 유네스코(UNESCO), 신탁통치이사회, 식량 및 농업기구(FAO) 및 23개국 대표와 스위스자연보호연맹, 국제자연보호사무소, 국제생물학연맹(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등의 NGO가 모여 IUCN의 가헌장을 만들고 유네스코와 프랑스가 IUCN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1948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 프랑스의 풍탕브로(Fontainebleau)에서 IUCN 설립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 국제기구는 유네스코가 국가들은 프랑스가 그리고 NGO들은 스위스자연보호연맹이 주도적으로 초대하였다. 세계자연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IUCN은 국가, 정부 기관, NGO, 연구소 등에게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는 NGO(스위스의 민법에 의해 설립)이다. IUCN이 회원자격을 국가에서부터 NGO에게 개방한 것은 설립의 전개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UNESCO가 회원자격을 국가에게만 개방하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환경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NGO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손쉬운 복합적인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를 참여시킨 이유로서 재정적인 부담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와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IUCN의 결의안이 좀 더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초기의 IUCN은 총회에서 모든 회원이 함께 투표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1956년 IUCN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가와 정부기관 등 공적주체와 NGO들의 회의를 분리하였고 투표 역시 국가는 3표, 국제적 NGO는 2표 국내NGO는 1표로 차등하는 가중치투표제도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IUCN은 국제기구나 국내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합적 구조(Hybrid Structure)를 가진 독특한 NGO이다. 본부는 스위스 베른(Berne)에 있으며 53개국, 93개 정부조직, 55개 비정부 기구(NGO)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으로 6개 위원회와 네트워크에는 생태학, 법률, 교육, 회계학전문가 3천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나 세계자연보호기금과

함께 “세계 환경보전 전략”(1980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실현을 위한 전략(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소중히 하자)”(1991년)를 작성하였으며 람사협약의 사무국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20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다.

▣ 국제환경법의 분야

국제환경법의 분야에는 국제하천이나 해양의 수질 보호에 관한 분야,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질의 보전을 위한 분야, 자연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분야, 남극보호에 관한 분야, 폐기물에 관한 규제 분야, 보전에 관한 분야, 핵물질과 관련된 분야 등이 있다.

▣ 국제환경법의 특성

국제환경법의 특성으로는 국제법에서 파생한 특성관 환경보호와 관련된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국제법에서 파생한 특성으로는 국가간의 실질적 평등과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국제법 자체가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면서 유지하여야 할 보편성의 존재와 이러한 보편성의 가치가 강대국 중심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환경보호의 규범성은 있지만 국제환경법규 내지 선언들이 구속력이 없거나 미약한 관계로 이행의 확보가 절실하다

II. 용어 해설

는 차원에서 이행확보를 위해 국가간 실질적 평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시점이거나 시장 경제적 메커니즘을 도입한 교토의정서의 배출권거래허가제도는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환경에서 파생한 국제환경법의 특성으로는 환경문제의 시간적 공간적 피해의 규모에 따른 특성, 내지 환경문제의 다음세대에의 부담전가라는 측면에서의 세대간 형평의무가 강조되는 타 국제법에서는 찾기 힘든 면이 발견되고 있다.

▣ 국제협력의 원칙

본 원칙은 환경오염 및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 관할권을 넘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시작하여 국제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처라는 기본적인 전제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사전통지 및 협력의 의무(정보교환의무), 긴급사태통지의무,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시 내국민대우(정보, 정책참여, 사법적구제)등이 있으며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 기후변화협약, 및 2002년 알투스협약 등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린라운드(Green Round)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협상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1991년 미국 상원의원 M. Baucus가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무역규제조치를 환경정책과 연계함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연료의 사용을 일정비율 의무화한 미국의 1990년 대기정화법과 독일의 포장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예탁금제, 그리고 덴마크의 음료수용기 회수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몬트리올 의정서나 바젤협약 등의 개별적 협약에 의한 무역규제로서 지구차원의 환경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해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본부를 두고 1971년에 설립된 국제환경보호단체이다. 환경훼손의 중지과 복구, 핵실험 중지, 해양생태계보전 등의 목표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150개국에 4-5백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포경반대, 해양생태계 보호, 플루토늄 반출반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공해상의 핵폐기물 투기 활동 등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협약의 이행에 많은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1985년 7월에 일어난 레인보우 워리어호(Rainbow Warrior) 폭파사건 때문이었다. 그린피스에 소속된 대표적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40주년인 8월 6일을 기하여 프랑스의 핵실험 기지인 폴리네시아의 모루로아 환초 일대를 시위 항해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에 정박 중이던 7월 10일 자정 경 폭파·침몰되었다. 이 사건으로 포르투갈 출신 사진가 F.페레라가 희생되었고, 다른 11명의 승무원은 긴급히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다. 폭파 원인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이 프랑스 대외안전국의 공작으로 이루어졌으며,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도 묵인하였다는 설까지 나와 미테랑 정부를 국내외적으로 최대의 위기로 몰고 가던 중,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C.에르뇌 국방장관이 사임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한편, 그린피스는 예정대로 그들의 선

II. 용어 해설

박 2척을 무루로아섬으로 출항시켜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이란 한 국가에서 축적된 기술을 다른 국가로 이전함을 말한다.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기술이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진 환경기술이 필요하며 후진국들의 경우 환경오염 저감 대책으로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생물다양성협약과 의제21(21세기 행동계획),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등 3개 문서에서 ‘기술이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각 선언에서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개발의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의제 21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 조건을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열대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의 일부 지적 소유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및 교토의정서

협약의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고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본 협약은 기본협약과 부속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FCCC)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프레온가스(CFCs), 이산화질소(N₂O)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및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협약의 채택에는 1988년 11월 준비된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서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본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CO₂ 배출수준이 계속된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1990년 350ppm으로, 2030년에는 산업혁명이전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지구평균 기온은 1.5-4.5℃, 해수면은 20-140cm가 상승되어 홍수·가뭄·기상이변 속출, 경작면적 감소, 산림등 생태계 파괴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시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고 96.10. OECD 가입시에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당분간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OECD에 가입한 최선발개도국으로서 상응하는 의무부담을 기대하는 여타 선진국들의 기대 등을 감안시 보다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

나이로비 선언은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인간환경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여 1982년 나이로비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관리이사회 특별회담이 열린 자리에서 채택되었다. 본 선언에서는 환경, 개발, 인구, 자원의 상호연관, 자원 낭비와 빈곤이 동시에 환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환경문제와 남북문제의 연관을 논의하는 기초가 되었다. 1989년 UNEP의 회의와 병행하여 열린 비정부간기구(NGO)의 국제회의에서 작성된 “나이로비 성명(Nairobi Statement)”도 있어 구분하여야 한다.

II. 용어 해설

▣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남극지역을 평화목적에만 이용하고, 과학연구의 자유와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1959년 12월 1일 워싱턴 에서 채택되어 1961년 6월에 발효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 1월 28일 가입하였다. 본 조약의 주요내용은 남극에서 핵폭발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하고, 생물자원등을 보호하며 과학연구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을 설치하는 등 자연보호에 노력함과 동시에 남극월동대를 과건하여 과학관측을 계속하는 한편 인류활동이 남극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행하고 있다. 또한 1991년 10월 남극보호를 구체화 하기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 녹색 GNP(Green GNP)

녹색 GNP란 국민총생산의 개념에 환경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GNP에서 마이너스적인 환경오염부분을 상쇄한 순GNP의 개념이다. 환경을 자유재로 보지 않고 환경이 생산자본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내 생산요소와 더불어 생산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만들어 낸 진정한 부가가치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개념의 핵심은 환경 자산의 서비스를 국민계정체계내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 님비(Nimby) 현상

Nimby는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로 직역하면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이다. 즉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마을인근에 건설되는 것은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님비현상으로 각 지방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 해서 법정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7년 뉴욕 근처의 아이스립이라는 마을에서는 3,186톤의 쓰레기를 화물선에 실어 다른 지방으로 몰래 내보냈다가 탄로가 나서 미국 6개 주와 남미 3개국으로 부터 상륙을 거부당하고 6개월 동안 방황하다 돌아와 소각되기도 했다.

■ 다이옥신(Dioxin)

다이옥신이라고 흔히 알려진 화학물질은 고리가 세 개인 방향족 화합물에 여러 개의 염소가 붙어있는 화합물을 말하는 것으로 가운데 고리에 산소원자가 두 개인 다이옥신계 화합물(Polychlorinated Dibenzo Dioxin: PCDD), 산소원자가 하나인 퓨란계 화합물(Polychlorinated Dibenzo Furan: PCDF)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화합물들의 독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들의 모양과 크기이다. 모양과 크기는 염소의 수와 결합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다이옥신 분자에서 2, 3, 7과 8의 결합위치에 염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2, 3, 7, 8 - 사염화디벤조 - 파라 - 다이옥신(일명 TCDD)이다.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을 총칭해서 말한다. 다이옥신은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은 아니며 두가지 과정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채로 생성된다. 하나는,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로서 생성되거나 또 하나는 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화합물을 소각해서 생성된다. 또 어떤 금속물질들은 염소를 사용하는 산업공정 중에서 다이옥신 생성을 증가시키는 촉매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 화

II. 용어 해설

합물들은 낮은 증기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쉽게 가스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높은 옥타놀 물 분해계수(high octanol water partition coefficient)를 갖고 있으며 이는 몸 안에서 이 물질들이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고 대신 지방에 용해되어 몸 안에 남아 먹이사슬 과정에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환경보호부는 음식물에서의 다이옥신 섭취가, 사람들이 다이옥신에 노출되는 1차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공기중의 다이옥신은 토양과 물, 그리고 식물표면에 정착한다. 다이옥신이 묻은 식물이나 사료를 양, 소, 닭 등에 먹일 때, 다이옥신은 동물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똑 같은 일이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에게서 일어난다. 사람들이 이러한 동물들로부터의 고기를 먹을 때, 다이옥신은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서,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게 된다. 주요 다이옥신 발생원으로는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주로 펄프, 제지, 도금, 제강, 발전소와 같은 산업공정 및 도시대형 소각로, 산업폐기물 소각로, 생활소형 소각로, 병원 소각로 등의 소각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쓰레기 소각은 대기 중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의 주요한 발생원이다. 다이옥신은 선천적인 기형아(성기이상, 무뇌아, 척추이분증) 출산,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여성들과 남성들에게서의 호르몬관련암(유방암, 고환암), 반복되는 자궁 출혈과 통증, 불임, 면역기능 저하, 반복되는 감염증세, 염소성 여드름과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된 후 나타나는 피부질환, 어린아이의 발육부전, 말초신경질환, 중추신경계질환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에 들어간 다이옥신은 수년간 내자 혹은 수십년 후부터, 혹은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발암성, 최기성(기형을 유발하는 성질) 등 치명적인 손상을 끼친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체 내에서 다이옥신이 인체에 축적되는 신체부하량(body burden)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이옥신이 누적됨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을 촉발하게 된다. 체내에 1Kg당 다이옥신

17ng(나노그램, 1ng은 10억분의 1g)이 축적되면 남성호르몬이 감소되고 42ng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킨다. 1백ng이상 축적되면 암이 생겨난다. 아주 적은 양에서도 다이옥신이 생식계 및 면역장애를 야기시키고, 일정 한계치 없이 암 발생을 유발시키는 것을 볼 때, 다이옥신이 “안전한” 노출한계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환경 -우리의 몸은- 이미 다이옥신 유사 화학물질로 포화가 되어 있어(over-burdened), 아주 적은 량에 노출되어도 생식계 및 면역장애, 암 발생을 촉발할 수 있다.

■ 대기오염

정상적인 대기의 조성과 현저하게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대기로서 그로 인하여 인간 생활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경우를 지칭하나 특별한 정의는 없다. 이에선 사람만이 아니고 기타 동식물도 포함되어야 하며 조각품 등 미술품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기오염의 원인에는 먼지나 연기, 자동차 배출가스등이 있다.

■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75년 구주안보회의에서 스웨덴등 북구대표들이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문제를 공식제기하여 1979년에 협약이 채택되고 1983년 3월에 발효되었다. 본 협약은 동구와 서구권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대기환경을 다룬 최초의 다자간 환경협약이나 구체적 규제사항은 없고 과학 및 기술정보교환을 촉진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방출을 저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II. 용어 해설

▣ **대세적 의무(erga omnes)**

대세적 의무란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1970년 ICJ Barcelona Traction 사례에 국제사회의 근본적 규범으로서 다자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로 규정되거나 형성된 것이다. 어떠한 국가가 이러한 의무 위반을 구제나 대응조치를 취할 근거로 원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논쟁의 소지가 많다. 이론 상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라 할지라도 해당 의무 위반을 원용 할 수 있을 것이나 ICJ는 Barcelona Traction 사례에서나 이전의 South West Africa 사례에서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국이 법적인 권리나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를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위원회는 2001년 국가책임규정 초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문의 규정으로 해결을 하였는바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는 제42조 (b)항에 의해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 역시 제48조를 통해 책임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동경 선언 1994(Tokyo Declaration 1994)**

1994년 10월 Tokyo Conference on Global Environmental Action에서 리우회의의 정신의 강화와 인구와 환경, 무역과 환경, 재정과 재정체제, 인간부문의 동반관계 등 4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선언이다.

▣ 동물실험(Animal Experiment)

의학·생물학 연구의 한 방법으로 동물실험(인간을 대신하여 살아 있는 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외상을 입혀 그 반응을 조사함)을 체계화 한 것은 19세기 프랑스의 클로드 베르나르임. 동물실험은 생물의 기능해명에 크게 기여했으나, 한편으로는 그 잔혹함 때문에 의학에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1970년부터 미국, 유럽에서 동물복지라는 관점 아래 실험의 과학적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동물실험 반대 시민운동이 일어났으며 유럽회의는 1985년 동물실험을 5년 이내에 전폐하라는 권고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현재 토끼 눈 점막의 약물 자극성을 보는 트레즈 테스트와 반수의 동물이 사망하는 양을 찾아내는 LD 50테스트는 의학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동물만 학대할 뿐이라 하여 세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동물실험 외의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수의 감축(Reduction), 마취 등에 의한 고통완화(Refinement)라는 3R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세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인식 되었다. 대체법 개발은 동물복지 관점만이 아니라 세포배양 등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을 찾자는 동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 졌다.

▣ 라누호(Lanoux lake) 사건

1957년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국제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국제하천을 둘러싼 상하류국의 권리의무에 대해 판결한 사건이다. 본 사건은 프랑스 내의 Lanoux호의 물이 Carol강을 경유하여 스페인의 Segre 강과 합류하는데 프랑스가 스페인의 동의 없이 수력발전소를 건설 할 목적으로 프랑스의 Ariege강으로 수로를 변경을 시도하는데서 발단되었다. 스페인은 즉시 이러한 행위는 양국 간

II. 용어 해설

사이의 협약인 Bayonne협약 위반이라 주장하였는데 비해 프랑스는 수력발전에 이용한 후 Ariege강에서 다시 Carol강으로 돌려놓으므로 이 경우 전체 강의 유량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국제관습법 상 스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하였다. 양당사국의 동의하에 본 분쟁은 중재재판으로 부탁되었는데 중재재판소는 프랑스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Carol강의수량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프랑스의 행위는 Bayonne협약 위반이라 볼 수 없으나 만일 이러한 행위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면 스페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부가함으로써 국제하천의 상하류국의 국제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해결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런던 스모그 사건

1952년 겨울 발생한 사건으로 런던의 상징인 안개와 산업체 및 가정에서 나온 아황산가스 및 먼지가 결합하여 짙은 오염안개를 만들어내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당시 영국 런던의 대기오염은 주로 공장의 배기가스, 빌딩이나 가정의 난방으로 인한 매연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여기에 짙게 깔려 있는 안개가 오염을 더욱 악화시켰다.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자 연료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매연 배출량도 증가하여 공기 중의 황산화물 함유량이 평소의 2배에 달하였고 안개와 매연이 결합하여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면서 가시거리가 100m도 안되어 제대로 사물을 알아볼 수 없었다. 살인적 스모그 사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처참했던 이 사건은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일어났다. 주로 노인, 어린이, 환자 등 허약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습하여 4,000여명의 호흡기질환 환자가 사망하였고, 다음해 2월까지 8,000여명의 사망자가 늘어나 총사망자는 12,000여명

에 달하였다. 유아와 노인 사망자가 많았고, 45세 이상에 있어서는 연령과 사망자 수가 비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뮤즈계곡 사건 및 도노라 사건은 공장의 배기가스가 원인 된 스모그형이며 LA형 스모그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원인이 된 스모그인 반면 런던형 스모그의 특징은 가정난방의 배기가스가 원인이 되었다.

▣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협약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London Convention)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되어 1972년 2월 오슬로 덤핑협약을 모체로 하여 1972년 12월 82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런던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동 협약에 가입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에서의 선박, 항공기, 인공해양구조물로 부터의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고의 투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환경분야 최초의 지구차원 협약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나 협약이행을 위한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등 강제조항이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1972년 이후 해상투기 오염원의 증대 및 협약이행 규정미비로 인한 협약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협약전반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대두, 수차례의 협약 개정그룹회의를 거쳐 1999년 10월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개정의정서는 종래의 투기를 금지하는 물질을 부속서에 규정하는 negative system에서 부속서에 규정된 물질외에는 투기하지 못하는 positive system으로 규제방법을 전환하고, 런던협약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내해에 대해서도

II. 용어 해설

각 당사국이 의정서 관련 조항을 적용, 투기 또는 해상소각에 해당되는 폐기물 처리 행위를 통제하여야 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한편, 분쟁해결 절차 및 책임과 배상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런던협약의 내용을 전면 강화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함 등에 대한 동 개정의정서의 적용이 배제되고 관련 당사국의 자발적 의정서 적용을 촉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군함등 주권면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국내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법상의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런던협약(개정)상의 투기 품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등 동 협약의 국내적 수용에 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등 관련국의 비준동향을 보아가면서 비준여부 및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육상매립지 부족, 사업장 오니 등 해양투기가 필요한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환경적으로 무해한 방법에 의한 해양투기 배출량을 늘려가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강화된 개정협약의 채택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로마클럽

1968년 이탈리아의 실업가 Aurelio peccei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적인 연구단체로서 지구의 관점에서 유한한 지구와 인류가 직면하는 자원, 환경, 문화 등 모든 문제에 관한 연구와 보고, 계몽활동을 해왔다. 로마클럽을 일약 유명하게 한 것은 1972년에 발표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로, 시기적으로 세계적 인 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자원,식량,환경의 면에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하는 절박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그 후 외적,물리적 한계의 강조보다도, 지구상의 지역간 불균형, 인류 공통의 세계상에 대한 탐

구, 학습이나 상호이해의 시스템 제창 등으로 활동의 중심이 옮겨졌다. ‘전화기에 선 인간사회’, ‘국제질서의 재편성’, ‘낭비의 시대를 넘어서’, ‘인류의 목표’, ‘한계 없는 학습’이라는 일련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 1970년대에 인류의 국지적 위기를 호소한 그의 계몽적 역할이 크다.

■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943년경부터 맑은 날씨에 안개가 발생하는 새로운 스모그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스모그에 의하여 눈의 자극, 식물의 낙엽 현상, 악취 및 고무의 균열 등의 피해가 생겼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1956년경에 와서야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의 광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식물의 피해와 고무의 균열은 주로 오존에 의한 것이며 눈의 자극은 오존과 더불어 알데히드, PAN(Peroxy Acetyl Nitrate)등 광화학적 생성물질에 의한 것임도 밝혀지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주원인이며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1차 오염물이 대기 중의 태양광선 에너지에 의하여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 사건의 이름을 딴 광화학 스모그를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연등 1차물질에 의한 것을 런던형 스모그라 한다.

■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Harmful Chemicals & Pesticides)

이 협약은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독성물질의 오용과 사고에 의한 누출로부터 사용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우

II. 용어 해설

선 국내적인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시키고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수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2개 국가 내에서 판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는 수입 국가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도 중지된다. 이 협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되며 발효될 때까지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FAO와 UNEP의 잠정적인 연합 하에 PIC(Prior Informed Consent) 리스트에 오른 모두 22개 종목의 화학물질과 7개의 살충제를 수출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 리우선언(Rio Declaration)

리우 선언의 공식명칭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데 자네이루 선언”이며, 5개항의 전문과 27개항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우선언은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선언이지만, 이들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법과 시행령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리우 선언 작성을 위한 협상교섭은 UNCED 제2차 준비위원회(91.3, 제네바)에서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작성토록 한 결정에 따라 개시되었고, 이러한 원칙을 초기에는 편의상 지구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여 오다가 제4차 준비위원회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데 자네이로 선언”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명칭부여에는 UNCED가 지구환경보호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유엔 인간환경회의(1972. 스톡홀름)개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되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의 명칭이 “인간과 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리우 선언의 작성교섭에 있어 동

선언이 향후 지구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각국은 제원칙의 토의에서 자국의 입장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한 입장대립의 양상이 노정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공히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노력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선진국은 범세계적인 조치 필요, 국가별 조치의무, 강력한 예방조치 및 오염자 부담원칙 등 환경보호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반면 개도국은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권리의 보장, 개도국의 특수한 사정,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이고 누적적인 책임을 고려한 보상형식의 재정·기술지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관계에서 교섭, 합의된 리우선언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반된 입장을 교묘히 절충, 작성되어 전체적으로는 매우 균형적인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개도국으로서는 인간이 환경중심(원칙 1), 주권적 자원개발 권리(원칙 2), 개발의 권리(원칙 3), 개도국의 특수사정(원칙 6), 환경과 무역관계(원칙 12), 예방조치 및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시 국별능력고려(원칙 15, 16)등 관심사항들이 대부분 수용되어 있고, 다만, 공동의 차등적인 책임(원칙 7) 관련규정은 개도국의 기본입장에서 많이 후퇴하였으나 재원과 관련된 의미가 삽입되어 있어 전반적인 만족을 표하였다. 역사적 책임자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진국으로서도 공동의 차등적 책임(원칙 7), 인정에는 다소 불만이 있으면서도, 환경과 개발 수요충족을 위한 개발권리(원칙 3), 개도국의 특수사정이외에도 모든 국가의 필요 고려사항 포함(원칙 6), 예방조치 및 오염자 부담원칙 삽입(원칙 15, 16), 환경 영향평가(원칙 17), 잠재적 환경영향시 사전통고(원칙 19) 및 개별 이슈에 대한 언급 삭제 등이 합의됨으로써,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I. 용어 해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협약의 공식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ouna and Flora)이다. 야생동식물 보호협약은 수출입국간 협력하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 또는 과도한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고 이들 야생동식물을 보호하자는 국제여론이 형성되고 1963년 IUCN 결의를 통해 그 초안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1973년 2월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채택, 1975년 7월 발효되었다. 협약은 1,000여종의 협약대상 동식물을 규제 정도에 따라 3개의 부속서에 나누어 등재하고 거래에 대한 수출·수입 증명서 발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1군 리스트(국제교역에 의해 멸종대상 또는 그 위기에 있는 종으로 상업적 거래는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수출입국 모두의 허가 필요한 목록), 2군 리스트: 현재 멸종위기는 아니나 장래에 멸종이 우려되는 종으로 상업적 거래 시 수출국의 허가가 요구되는 목록), 3군 리스트(국제교역이 원칙적 가능하며 원산지 증명서만이 필요한 목록)로 나누어 코뿔소·호랑이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히 엄격한 규제를 요하는 야생동식물 및 그 파생품은 부속서 I에 규정하여 수출국의 관리당국에 수출허가서 발급 시 수입허가서를 확인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향 노루, 곰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으나 엄격한 규제를 요하는 야생동식물 및 그 파생품은 부속서 II에 규정하여 수출관리당국의 수출허가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부속서 III은 개별당사국이 자국내 동식물중 규제 대상으로 요청한 종으로서 동 요청국가와의 거래시 부속서 II에 준하

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동 협약은 발효이후 상당기간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증대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92.6.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어 유전자원 및 종의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CITES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프레온가스(CFCs)나 할론등 지구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7.9. 채택되어 89.1. 발효되었다. 오존층 파괴문제는 1970년 독일 과학자 Crutzen이 질소 산화물에 의한 성층권 오존의 연쇄적 파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오존층 파괴 메카니즘에 대한 논문이 연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국제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과학 아카데미가 자체조사를 진행, 1976.9. 21세기말까지 오존층 감소가 7%에 달할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오존층 파괴물질 금지 및 감축노력이 개시되었다. 1976.10. 미 의회는 프레온가스의 에오졸 분사용 사용금지를 가결하였고 77.3.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존층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80.3. EC 환경각료회의는 프레온가스의 생산력 동결, 사용량 감축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남극 오존층 파괴는 계속되어 1984년에는 1950년대 후반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1987년에는 10-15km 고도에서 약 95%가 상실되었다. 통계상 오존농도 1% 감소시 유해자외선(UV-B)의

II. 용어 해설

양은 2% 증가하며 이에 따라 피부암 3-4%, 백내장 0.6%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 CFC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필수적 용도를 제외하고 96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개도국은 2010년까지 사용을 전폐하여야 한다. 할론은 선진국은 94년부터, 선진국은 2010년부터 전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92.2. 동 의정서에 가입(92.5 발효)하였으며, 94.10 제6차 당사국총회시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여 규제물질 감축일정상 수혜 개도국으로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고 다자기금의 납부의무도 면제받게 되었다. 최근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주로 개도국 농업분야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서 선진국에서는 2010년을 전폐일정으로 잡고 있으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전폐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Methyl Bromide에 대한 규제일정 강화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개도국의 조기전폐를 촉구하고 이를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이며 개도국들은 조기전폐조치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그동안 두 차례 주요 개정이 있었는데, 90.6. 런던 개정시에는 개도국의 오존층 파괴물질 조기전폐 유도를 위한 다자기금을 설치하였으며, 92.11. 코펜하겐 개정시에는 CFC의 대체물질로 사용되는 HCFC, HBFC 및 메틸브로마이드를 규제물질로 추가하였다.

■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무역제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이 이미 1933년에 체결된 사실을 보면, 무역·환경간 관계의 연원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무역 관계가 국제관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냉전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환경협약의 체결이 가

속화되었으며, 이런 협약들은 협약의 이행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요인으로 인하여 GATT를 중심으로 확립되어 온 자유무역질서가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다. 즉, 환경관련 무역조치들은 GATT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GATT의 일반규범에 위반될 경우라도 제20조의 예외규범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한 무역규제조치는 GATT 규범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선진국은 환경협약상 무역조치는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들어, GATT/WTO가 이러한 무역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즉,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가 GATT/WTO 규범과 상치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개도국들은 GATT/WTO가 환경목적으로 취해지는 모든 무역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선진국이 주장하는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의 정당성 인정은 일종의 백지수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선진국은 또한 개도국이 환경파괴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코자 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환경피해에 상응하는 관세부과를 하는 등 동등한 여건(level playing ground)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개도국들은 각 국가의 환경여건이 상이하며, 국별 특수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술 및 재력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이 자국의 높은 환경기준을 개도국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개도국으로

II. 용어 해설

하여금 영원히 개도국으로 잔류할 것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리우선언은 환경보호와 무역과 관련된 기본원칙으로 원칙 제12에서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 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수입국의 관할지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적인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개별국가가 조약상의 근거 없이 단독으로 취하는 일방적 통상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 환경보호를 위해 통상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협약으로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환경과 무역 이슈에 대한 논의는 그간 GATT/WTO, UNCTAD, ISO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GATT/WTO가 무역규범과 환경규범간의 법적인 관계를 집중 검토해 오면서, 소위 그린라운드의 태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다. 여기서 라운드라고 하면, 그간 GATT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의미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린라운드의 주체는 WTO가 될 것이다. WTO는 1995년 1월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96년 말까지 무역·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 논의의 성과는 환경과 무역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WTO는 아직 다음 라운드 협상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당분간은 UR 협정의 이행에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UR 협정중 중간평가 및 추가협상에 관련된 규정의 이행을 검토하게 되고, 투자·

경쟁정책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토의가 구체화되면, 다음 라운드 협상개시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무역의 이슈는 다음 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로 지목될 것이다.

▣ 미나마타 병

미나마타 병은 사람의 몸 속에 수은이 조금씩 쌓여 가며 생긴 수은 중독증이다. 어패류에 축적된 유기수은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신경질환으로 시야협착, 운동실조, 언어장애, 지각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미나마타는 일본 구마모또현 미나마타 시(熊本縣水候市)의 이름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여 병이 발생한 지방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미나마타 시와 그 주변의 어민들에게 원인불명의 신경질환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6년에는 7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18명이 사망하였다. 1968년 9월 일본 후생성은 공식 견해 하에서 메틸수은이 어패류를 오염시킨 것을 명시하고 오염된 어패류를 대량 취식한 사람만이 피해자이라고 공표하였다. 본 사건은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었던 사건이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대개 비중이 4를 넘는 금속을 가리키는데, 일단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런 중금속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서서히 몸 속에 쌓여 병을 일으킨다. 수은 중독은 실수로 수은이 들어 있는 수용성의 수은염을 먹거나 공장에서 수은 증기를 많이 쏘일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급성 중독일 경우에는 신장에 농축되어 설사, 구토, 탈수 증세를 일으키며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미나마타 병과 같은 만성 중독일 경우에는 수은이 중추신경에 침투해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나타내다가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 눈이 머는 시야 협착 등의 중증으로 발전하고, 이

II. 용어 해설

음고 발광 증세를 일으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미나마타 지방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공해가 일으키는 병은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어느 한도를 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미나마타 지방 사람들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56년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전, 즉 1953년에 벌써 이 지방에서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닷물 위로 물고기가 허연 배를 내놓고 뚱뚱 떠오른 채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조개가 죽어 있는 일도 많았다. 물고기나 조개뿐만이 아니었다. 하늘을 날아다니던 물새나 까마귀가 떨어져 죽는 일도 생겼다. 그리고 바닷물 속의 해초도 잘 자라지 않게 되었다. 괴이한 이변이 바다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집에서는 키우던 고양이가 미쳐 날뛰다가 죽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 미나마타 지방에서 기르던 고양이의 절반 정도가 이런 병으로 죽어 버렸다. 미나마타 지역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수은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폐수에 수은을 섞어 떠내려 보냈던 것이다. 공장 폐수에 섞여 흘러나온 수은은 바닷물로 들어갔다. 그 수은은 해초나 플랑크톤 같은 작은 바다 생물의 몸 속에 쌓여 갔다. 그러자 수은이 들어 있는 해초나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작은 물고기의 몸 속에 수은이 축적 되었다. 그리고 먹이 사슬에 따라 그 작은 물고기를 더 커다란 물고기가 잡아먹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결국은 미나마타 만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나마타 병에 걸리고 말았다. 미나마타 병에 걸린 환자의 머리카락에는 다른 지방 사람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보다 100배 이상 많은 수은이 들어 있었다. 미나마타 지방에 사는 건강한 사람의 머리카락에도 다른 지방 사람의 50배나 되는 수은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구마모토 대학의 연구반은 미나마타 만에는 화학

공장이 소비한 450t의 수은 중 150t이나 되는 수은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장의 폐수에서 흘러나온 수은이 바닷가의 개펄에 질척질척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은이 들어 있는 바닷가의 개펄은 4m나 되는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수은이 들어가서 굳어진 층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커다란 골칫거리이다. 이처럼 한 번 오염된 환경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직경 10 μ m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의 호흡기관을 통해 들어가 폐속으로 침투해서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병을 막아 내는 힘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약하게 만든다.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이상이 자동차(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발생된다.

▣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또는 marketable permit)

오염의 배출권한을 할당하여 그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오염의 배출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한 기업이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그 잔여분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이 배출권의 매매로 인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해저감기술 및 환경 친화적 공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동 제도는 기후변화협약에서 CO₂ 감축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는데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II. 용어 해설

주고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이때 가격 및 거래량은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대상 국가는 캐나다·일본·유럽·러시아 등 38개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5.2% 감소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흡수원이나 저장원을 보호해야 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메탄·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불화유황 등 6가지의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교토의정서에는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정해져 있다. 의무적인 대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과 보고를 위한 각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각 국가의 환경당국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권을 비교하여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배출권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배출허용량을 줄이거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원래는 국가 사이의 거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 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할 것으로 보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허용량이 미리 설정되기 때문에 환경목표를 세우기가 쉽고, 장기간에 걸친 배출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어 기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환경당국은 기술발전 또는 경제여건 변화 때마다 실시하던 세율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량을 수시로 감시할 수 없고, 국가나 기업체의 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3년 캐나다의 전력회사인 트랜스알타가 온실가스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칠레의 양돈회사인 아그리콜라사로부터 10년간 175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한 데 이어 도쿄의 전력공사도 아그리콜라사로부터 200만 톤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1차(2008~2012

년)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포함되어 제외되었지만, 2차(2013~2017년)에는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오 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바이오 안전성의정서란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관리 목적으로 체결된 의정서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인 본 의정서는 인간건강에 위해하거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s의 국가 간 이동, 경유, 관리 및 사용 등에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2006년 7월 현재 134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6년 9월에 서명하였고 2006년 내에 비준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서의 주요내용은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LMOs를 규정하고 이들의 국가간 이동절차를 밝히고 있다. LMOs는 환경방출용, 식용, 사료용, 가공용, 밀폐사용용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인체의약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환경방출용 LMOs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환경방출을 통해 위해성을 포괄 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한 사전통보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산물이 주를 이루는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s는 수입국이 국내법에 따라 사전통보합의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하게 되며,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밀폐사용용 LMOs는 환경방출의 위험이 적어 사전통보합의의 절차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 배출부과금 제도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II. 용어 해설

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제환경법에는 직접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국제환경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을 통해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배출허용기준이내라 하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 보팔사건(Bophal Case)

이 사건은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유니언 카바이드 사의 비료공장에서 40여 톤에 달하는 메틸 이소시아나염(M.I.C:Methylisocyanate)이 누출되어 수천명이 사망에 이른 국제적 환경재앙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약 2천명의 주민 사망하였고, 60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5만 명은 영구적인 장애자 되었다. 당시 보팔시의 인구가 75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팔시 시민 대부분이 이 유독물질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무색무취의 독성물질인 메틸이소시아나염은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로서 미량으로도 사람의 폐와 눈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를 일시에 파괴하는 독극물이다. 누출 사고의 원인은 저장탱크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밸브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 사는 이 사고에 대한 보고서에서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밸브 파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하였던 것도 주된 사고원인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조기경보체제가 작동하지 않아 더 큰 사고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도 보팔시의 참사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위험산업 내지 공해산업의 해외진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원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앤무어라는

곳에 위치하였는데 마을 주민의 격렬한 공해방지운동과 이를 받아들인 EPA의 “즉각적인 오염물질배출행위중지”와 같은 엄격한 감독 때문에 환경감독이 허술한 인도로 이전했다. 즉 1970년대 이후 환경적으로 유해한 위험산업에 대한 법적 즉 엄격한 안전관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피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다. 미국계 다국적 회사가 인도 보팔시에 비료공장을 세운 것은 이런 배경에서 연유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팔시민들은 유니언 카바이드사를 상대로 30억 달러의 민사소송을 1985년 4월 미국의 맨해튼 연방 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Forum Non Convenience(소송심리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편의 및 정의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이유 하에서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관할권행사를 거절하는 결정)을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1986년 5월 동지방재판소는 인도의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인도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송에서 유니언 카바이드는 89년 4억 7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끝내 형사책임을 부인하였다. 특히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유독가스 저장탱크가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과 주민들은 위험을 모르는 채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1989년 말 수립된 V.P정권이 이 판결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차 보상금 교섭에 들어가 50만명의 피해자에 대해 36억 루피의 구제금을 방출하였다. 보팔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14년 후인 1998년 9월 11일에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협약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Harmful Chemicals & Pesticides)이 체결되었다.

II. 용어 해설

▣ 보호지역(Protected Area)

보호지역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보전지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말한다. 국제환경법에서는 IUCN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지역을 의미한다. IUCN은 보호지역을 다음 여섯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 IUCN의 보호지역 관리범주(IUCN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1)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

주로 학문연구 또는 야생지 보호를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지역(때로는 엄격한 자연보존지/야생지역으로 불림)

(2) 생태계 보전과 관광(Ecosystem Conservation and Tourism)

주로 생태계 보전과 휴양을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지역(때로는 국립공원으로 불림)

(3) 자연적 특성의 보전(Conservation of Natural Features)

특정한 자연적 특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지역(때로는 천연기념물로 불림)

(4) 능동적인 관리를 통한 보전(Conservation through Active Management)

관리 개입으로 보전·관리되는 보호지역(때로는 서식지/종 관리 지역으로 불림)

(5) 경관/해양경관 보전과 휴양(Landscape/Seascape Conservation and Recreation)

주로 경관 및 해양경관 보전과 휴양을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지역 (때로는 관리되는 보호경관/해양경관으로 불림)

(6)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of Natural Ecosystem)

주로 자연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지역 (때로는 관리된 자원보호지역으로 불림)

■ 본(Bonn)협약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본협약)은 국가간의 경계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동물자원의 멸종을 막기 위해 보호, 관리를 위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협약부속서 I 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특정동물들을 열거하고 그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속서 II 에는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고 있는 동물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사막화(desertification)

사막화란 “심각한한발또는사막화를겪고있는아프리카지역국가등 일부 국가들의사막화방지를위한국제연합협약”에 의하면 건조·준건조 및 아습윤 지역에서 기후변동 및 인간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황폐화를 말한다. “사막”은 불충분한 강우 또는 토양 건조 등의 원인으로 식생이 적거나 결여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막화”는 토지가 가지는 생물 생산력의 감퇴 내지 파괴이며 종국적으로 사막상태를 초래하는 과정이다. 사막화는 지구규모 대기 순환의 장기적

II. 용어 해설

변동이라는 기후적 요인과 수목의 과도한 벌채, 가축의 과잉방목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며 생태학적으로 농경지로 부적합한 지역을 무리하게 개간함으로 인하여 일년에 지구상에서 600만ha의 농경지가 완전히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또 일년에 1,100만ha, 즉 남한만한 면적의 삼림이 무리하게 농경지로 개간되고 있는데 이의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만도 수백만의 인구가 삼림을 농경지로, 농경지를 다시 사막으로 만들면서 여전히 농경지를 찾아 국경을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미나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에서 땅을 무리하게 혹사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여 사막을 만들게 되는 동기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자원을 희생하였다가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경이 황폐해진 나라들도 많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지난 10여 년간에 소득이 감소되어왔다. 대륙에서는 삼림이 있어야 비가 만들어지고 또 내린 비를 저장하여 홍수와 가뭄을 막아 준다. 그런데 삼림을 없애니 비가 안 오고 비가 안오니 사막은 더욱 늘어나고 하는 악순환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로 인하여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입고 굶어 죽는다. 그 피해 인구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4년 6월 17일 파리에서 “심각한한발또는사막화를 겪고있는아프리카지역국가등 일부국가들의사막화방지를위한국제연합협약”이 채택되었다.

▣ 사전배려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배려의 원칙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한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거나, 낡은 기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배려 원칙

은 특정한 기술이 적용되기 이전에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안전성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술을 참된 과학을 통해 대체하자는 것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1970년대에 독일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유럽연합(EU)내 및 국제 환경정책 결정에서 법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에 유럽연합에서 미국과의 무역마찰 논란이 있을 때에 이 개념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지구 환경 정상회의라고 지칭되는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는 동회의의 채택문인 리우 선언에서 본 원칙을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리우 선언 원칙15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사전배려 원칙의 핵심은 환경과 미래세대의 건전한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인 확실성이 밝혀지기 전에 정책결정권자들이 조치를 취해 위해요소를 피해야한다는 것이다. 인류가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를 부양하는 자연계와 후손들도 돌봐야 한다는 의미 이것은 1990년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베르겐회의(Berge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매우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너무 늦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대체로 타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한 것에서 이 원칙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사전배려 원칙의 의미와 적용가능성에 관한 복잡한 논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공통주제가 도출되었다: 공식적으로 입증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 조치의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위해요소와 이에 대한 대응의 비례관계; 여러 환경적인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실수에 대한 생태적인 수용여

II. 용어 해설

지 제공;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안녕에 대한 인식; 잠재적으로 위 해한 행위를 제안한 자에게 입증 의무 전가; 미래세대에 미치는 악영 향에 대한 우려.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베르겐선언에서도 나왔듯이 사전배려 원칙은 지속가능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전배려의 적용은 현재 발생한 확실하고 이미 알려진 문제로부터 미래의 불확실 한 것까지 고려하도록 환경정책의 지평을 확대시킨다. 이를 통해 정 치인들이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며,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발생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사전배려 차원의 조치는 예측하 지 못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 또는 미래의 악영향을 방 지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자원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도 확실하지 않거나 없을 수 도 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위 해요인이나 손해에 대해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령지만, 민주주의는 현재의 시간이라는 척도 내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 고 있으며, 미래보다는 지금의 직접적인 만족이나 이득 때문에 정치적 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이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치유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 가 크다는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다. 1991년 12월 런던해양투기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결의문 44/14 를 채택함으로써 사전배려 원칙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폐기물 평가체제(Waste Assessment Framework)라는 포괄적 사전배려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입증의 의무를 투기업자에게 일부 전가시키 는 결과를 낳았다. 폐기물평가체제를 소개하면서 “특정한 물질을 환경 에 배출하거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추구할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국가 당국은 사전배려적 접근방식 을 채택하여 해로운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와 해상 소각,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가 중지된 것은 사전배려 원칙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1992년 5월에 기후변화협약이 합의된 것도 사전배려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전문 제5절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협약에 사전배려 원칙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이 구체적이며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사전배려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미국의 자세 때문이다. 1994년 11월,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의안 9.24가 채택되었다. 이 결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배려 원칙을 적용하여 당사국은 종의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아마도 국가간 거래에 의해” 어느 종이 “악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와 같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진정한 사전배려 차원의 절차가 특정 종의 부속서 목록 등재에 적용되고 있는데, 종의 등급이 완화될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 등급 완화를 제안한 국가로 이를 입증할 의무가 전가된다. 이 결의안은 사전배려 원칙이 운영원칙에 포함된 초기 사례에 해당한다. 본 원칙은 과학의 미발전 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환경법의 입법 및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 이론은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고 개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 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이 있어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중 일부국가는 이를 원칙(principle)이라 표현하지 않고 접근방법(approach)라 하여 사전주의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이라고 지칭하여 그 규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다.

II. 용어 해설

▣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on Principle)

사전예방의 원칙은 국가가 자국내에서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본원칙이다. 본 원칙은 상기의 사전배려의 원칙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제2조는 “각국은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칠 인간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194조 역시 “모든 국가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양오염을 방지경감 또는 통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대부분의 해양오염방지협약(오슬로 덤핑조약, 런던덤프조약, MARPOL조약) 등 대부분의 협약이 이를 규정하여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전통보동의(Advanced Informed Agreement : AIA)

국가 간에 유해물질과 같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이동될 경우 해당 물질이 이동되는 국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물질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물질을 제공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89년 채택 1992년 6월부터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 보장을 위해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 산림원칙(Forest principles)

정식명칭은 “전세계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제 원칙 성명”으로 1992년 리우회의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성명의 형태로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산림분야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모든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총 15개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녹화에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모든 나라 특히 선진국은 가능한 한 재조림과 확대조림 및 산림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림경영은 생태적 균형과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접지역의 경영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각급 정부와 국제사회는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장애요인과 산림자원에만 매달려 사는 빈곤한 농산촌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토속적인 지식도 존중·개발되고,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에 응용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이익은 지원주민들에게 고루 환원 되어야 한다.

*경영관련 정책수단으로서 지역적 필요와 문화적 가치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산림관련 계획과 기타 활동의 공식화, 개발, 시행에 청소년, 여성, 토착주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참여기회 제공, 개선되어야 한다.

*산림, 산지와 임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가치를 복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과 평가의 강화하여 생태관광이나 유전물질의 적절한 제공 등과 같은 피해가 없는 이용 등으로 산림의 가치를 증대하여야 한다.

II. 용어 해설

*정책방향으로 자연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원주민의 문화, 사회, 경제, 물질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역할을 인식, 조화, 촉진, 강화해야 한다.

■ 산성비(Acid rain)

산성비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 할 때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대기중에서 수증기와 반응하여 황산과 질산으로 변한 후 이 산화물질이 공중에 떠 있다가 비가 내릴 때 빗물 속에 용해되어 내리는 것을 말한다. 산성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아황산등의 양이 대기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농도가 결정된다. 산성의 강약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보통 수소이온농도(PH)가 사용되고 있는데 PH5.6이하인 빗물을 산성비라고 한다. 산성비는 빗물, 서리, 눈 등도 포함하며 건물, 교량,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토양, 수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 생명공학(Biotechnology)

생명공학이란 생명현상의 유전형질인 핵산(DNA 및 RNA) 및 세포의 구성성분, 구성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변형함으로써 생물 또는 미생물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거나 유용한 생물종을 개발하는 학문으로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현재 인체 인슐린을 비롯하여 성장호르몬, 인터페론, 인터류킨 등 여러 가지 의약품이 개발 중이거나 이미 시판되고 있으며 기초 화학품에 이용하는 공업분야, 바이오가스나 연체연료를 생산하는 에너지

지 분야, 품종개량에 핵심역할을 하는 농림 축산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생명공학이 응용되고 있다.

■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or Biodiversity)

육상, 해양 및 그 밖의 수생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생태계복합체(ecological complex)를 포함하여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체간 병이성(variability)을 말한다.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또는 종과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군과의 다양성을 포함하며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라는 세 가지 단계의 다양성을 종합한 개념으로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며 인간과 생태계등 경제개발에 필요불가결한 생명부양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자원이다.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협약의 공식명칭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동식물 멸종률(매일 70여종 멸종)이 지속된다면 50년 후에는 전체 동식물 종의 4분의 1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농산물, 식료품 원료 등을 제공하며 그 잠재적 혜택은 가치로 따질 수 없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하에 정부간 협상회의를 개최, 92.5. 생물다양성 협약을 채택하였다.

II. 용어 해설

동 협약은 당사국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정분배를 위한 국내적 조치의무와 기술이전 의무(선진국) 등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까지 각국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에 대해 별다른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협약화 협상과정에서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각종 유전자(gene)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생물다양성 자체를 또 다른 형태의 자원(resource)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순수한 의미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키로 되었던 생물다양성 협약이 유전자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반된 입장을 타협, 반영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개도국들은 주로 열대림등 자신들의 영토내에 풍부하게 부존된 생물다양성을 자신들의 자원으로 간주,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무제한적으로 사용하였던 유전자원들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유전자원 활용시 사용료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적으로 제조된 새로운 유전공학물질에 대하여도 공동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접근(free access)과 유전공학 기술 및 신물질에 대한 독점적 지적소유권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의 입장에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유전자원 개발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유전자원 제공국)은 선진국에 유전자원 개발을 허용하되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공평하게 배분할 것과 유전자원 개발기술에 대한 개도국 접근 허용 의무를 선진국에 부여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최근까지 3차례의 걸쳐 개최된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방식, 선진국 소유의 관련기술 대개도국 이전 등이 중점 협의되었으나 선·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유전공학을 14개 과학기술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둘러싼 움직임은 우리의 유전공학 발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의 부존량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유전공학 발전을 위해 유전자원의 수입이 불가피한 전망임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강화를 주장하는 개도국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나, 유전공학 기술의 이전요구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개도국 입장에 동조하면서, 가능한 한 선진국의 유전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널리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인류를 위하여 사용될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유기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 요소를 말한다.

■ 생물재해(Biodisaster)

우발적인 사고 혹은 고의로 병원체나 유전자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조생물’에 의해 연구실이 감염되거나 이들이 일반 환경으로 유출되어 주변 주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위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물재해라고 한다.

■ 생물학적 방제(Biological Control)

유해 생물의 활성력을 천적의 도입과 같은 생물적 수단으로 저감하는 구제방법을 말한다.

II. 용어 해설

▣ 생물학적 변환(Biological Conversion)

생물(주로 미생물)을 써서 어떤 화합물을 다른 화합물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생물학적 봉쇄(Biological Containment)

생물학적 봉쇄란 유전자 재조합 실험에서 보통 환경에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숙주를 쓰는 격리 방법을 말한다.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란 수질 유기오염지표의 한가지로서 어떤 물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이다. 즉,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호기성 박테리아가 일정 시간 내에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ppm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물이 오염되어 있으며 유기물이 많게 되고 따라서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데에 필요한 산소의 양도 증가한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오염된 물 속에서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1ℓ의 물속에 1mg(1,000분의 1g)의 산소가 필요 할 때를 1ppm이라고 한다. 상수원수는 3ppm이하, 농업용수는 8ppm이하로 권장되며 5ppm이상이 되면 하천은 자기정화 능력을 잃으며, 10ppm을 넘을 때는 악취를 풍기는 오염수로 평가된다.

▣ 생태계(Ecosystem)

생물다양성협약은 개념조항을 통해 생태계를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락과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비생물적인 환경의 역동적인

복합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그 지역 내의 비생물적인 환경을 통 털어 하나의 계로 다룬 것으로 주로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주목하여 기능적인 계로 파악한 개념이다. 생태계에는 기후나 토양 같은 무기적 환경과 생산자(녹색식물 등), 소비자(동물), 분해자(미생물, 균 등)의 4가지 요소가 있으며, 무기물-유기물-무기물이라는 물질교대(물질대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자연계에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으로 광합성이 그 대표적인 과정이며 ‘소비’란 유기물을 소비하거나 유기물로부터 2차적으로 다른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이며, ‘분해’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개발은 그 형평을 깨뜨리고 일반적으로 더 단순화된 다른 생태계로 변질된다. 이를테면 삼림을 벌채하면 동물상이나 미생물상이 변화하고 무기염류가 유출된다. 특히 표토가 얇은 열대림을 벌채하면 토양침식에 의해 불모화된다.

▣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생태계 다양성이란 삼림, 초원과 같은 서로 다른 생태계의 빈도와 다양성을 의미한다.

▣ 생태계 안전성(Ecosystem Safety)

생태계 안전성이란 어떠한 외부요인이 새로운 생태계에 도입될 때, 이 외부요인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을 의미한다.

II. 용어 해설

▣ 생태계 안정성(Ecosystem Stability)

어떠한 외부요인이 새로운 생태계에 도입될 때, 이 외부요인이 생태계의 진화 또는 생태계의 천이과정에 나타내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생태관광(Eco-Tourism)

다양한 생물상, 희귀 동식물, 원시림 등을 소유한 지역을 본래 생태특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환경산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 생태적 재해(Ecological Disaster)

생태계재해란 인위적 원인에 의해 생태계에 나쁜 변형이나 파괴가 생겨 그 결과가 인간의 건강이나 생활을 해치는 현상을 말한다. 한 예로 나일강 하류 부근에서는 에스원 댐 건설에 의해 플랑크톤 발생량이 감소하자 어획량도 감소하였고 물이 댐으로부터 관개수로를 통해 농경지로 운반되는 동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다슬기가 생기고, 그것을 중간 숙주로 사는 주혈흡충의 만연을 가져와 지역민의 보건에 위해성을 초래하였다. 이는 댐이라는 개발행위에 의해 생태적 연쇄에 따라 일어난 생태적 재해의 예로 널리 언급되고 있다.

▣ 생태학(Ecology)

생태학이란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분자생물학이 실험실에서 미시적 단계의 생명현상을 물리화학

적 방법을 통해 추구하는 것과 달리, 생태학은 거시적 단계의 개체군이나 생물군락을 대상으로 동종·이종의 생물 상호작용, 환경에서 활동을 연구한다.

▣ 서식지(Habitat)

람사협약은 서식지를 생물체 또는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소 또는 그 유형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물의 개체 및 군체가 자연 발생하는 장소나 위치의 유형을 의미한다. 서식지는 종의 현지 내 보전 시 중요 고려 사항인데 이는 종 혹은 개체군은 흔히 여러 생태계에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서식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세계 환경의 날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에 의한 권고를 받아, 같은 해 제27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세계 제114 개국의 정부대표가 모여서 환경파괴에 대한 회의를 기념해서 그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고, 매년 각국에서는 이날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날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이날을 중심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및 주민운동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1879년 국제기상기구의 새 이름으로서, 가맹국의 기상기구가 오랫동안 기상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행해왔다. 그러나 전후통신이나 교통기관의 현저한 발전에 수반하여 세계의 기상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증

II. 용어 해설

대함에 따라 세계기상기구조약에 근거해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1950년에 세계기상기구가 설립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줄임말로써 세계보건기구라고 칭한다.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하나로 1948년에 비준되어 발족했다. ‘모든 인민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종 전염병의 예방, 환경 위생, 방사선 위생 등에 대해 정보 교환, 연구 촉진, 기술원조 등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세계자연보호기금(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1961년 설립된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스위스 그란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민간자연보호단체임. 28개국의 각국 위원회, 공식 협력단체로 구성되었으며 1991년 현재 지지자는 4백 20만명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기부금을 모아 세계 1백 30개국 이상에서 자연보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 추진, 환경오염과 자원에너지의 낭비 방지를 3대 사명으로 삼고 있다.

▣ 세라필드 핵발전소 사건(Sellafield Mixed Oxide Plant)

본 사건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2001년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건이다. 영국의 캄버라 군(Cambers county)에 위치한 세라필드에는 이미 1953년도부터 영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해 왔는데

1993년 British Nuclear Fuels 회사(BNF)가 기존의 발전소에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혼합핵발전소(Mixed Oxide Plant: 이하 MOX 발전소)를 신축 허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일랜드 해(Irish Sea)에 인접해 있는 해안가 지역으로 아일랜드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핵발전소 운영과 관련 아일랜드의 반발로 국제적인 분쟁이 있어왔던 지역이다. 2001년 아일랜드는 본 문제가 유엔해양법협약과 “동북 대서양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OSPAR협약)상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영국에 대한 중재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OSPAR 협약(이하 본 협약) 제32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중재재판소에게 부탁된 주요 쟁점은 영국이 아일랜드가 MOX 발전소 관련 영국에게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본 협약 제 9조[정보의 접근](Access to Information)를 위반했는지의 여부였다.

본 사안에 대해 아일랜드는 1950년대 세라필드에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질 때부터 우려해 왔고 지속적으로 본 지역이 원자력 활동지로서 자리매김 되는 것에 반대해 왔다 특히 해당 발전소로부터 원자력 물질이나 관련 물질이 아일랜드 해에 유입되는 것을 우려함 뿐만 아니라 본 발전소에 사용될 원자력 물질이 선박을 통해 운송될 때 아일랜드 해를 사용할 것이고 이 경우 선박으로부터도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특히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아일랜드 해에 흘러들어간 방사능물질로 인해 이미 아일랜드 해는 심각한 오염이 있어왔고 전 세계에서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은 MOX발전소는 영국 국내의 법률은 물론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Treat Establishing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조약)을 포함한 EC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준수되고 있으며 특히 EC는 1997년 보고서에서 MAX발전소의 정상적 가동 및 사고에 의해 나올 수 있는 방사능 폐기물은 인간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

II. 용어 해설

해를 가져오지 않으며 다른 회원국에도 피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밝히며 있으며 본 보고서에 아일랜드가 어떠한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상기하고 있다.

MOX 발전소의 경제성은 본 분쟁의 주요한 사안 이었는데 그 이유는 Euratom 조약은 국가는 MOX 발전소와 같은 산업시설로서의 원자력 발전소는 그 사회·경제적 이익이 그로부터 나오는 위해성보다 커야한다는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 영국은 이 조건에 합치하기 위해 MOX발전소 관련 1997년 및 2001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보고서들은 일정 정보 및 특정 부분들이 제외된 채 공개된 바 있었다. 아일랜드는 중재재판부에 미공개된 정보는 첫째, MOX 발전소 운영이 다양한 국제협약상의 의무 준수 여부, 둘째, 동 발전소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셋째, Euratom 조약상 요건인 비용 편익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국은 양 보고서의 원본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일랜드는 영국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로서 판매가격, 판매량, 발전소의 가동수명, 발전소의 생산용량, 발전소 내에서의 작업인 수, 발전소 내외로의 수송 건수, 혼합핵(Mixed Oxide) 공급과 관련된 정기 계약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14가지를 요구하고 만일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본 협약 상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은 중재재판의 관할권 없음과 수리불가능성과 같은 선결적 항변 외에도 협약 제9조는 어느 개인이나 국가가 정보를 받을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상기의 정보는 동 협약 제9조 2항 상의 정보가 아닌 3항 상의 상업적 정보로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라고 주장하였다.

1) Euratom 조약 6조 1항.

중재재판소의 첫 번째 안건은 본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문제였다. 중재재판소는 본 사안, OSPAR 협약 제9조 2항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법은 OSPAR협약 하나임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본 협약 외에도 다른 협약들 특히 알후스 협약(Åarhus Convention)과 EC의 조치들 및 국제관습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일랜드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아일랜드 중재재판관인 Gavan Griffith는 반대의견을 통해 알후스 협약의 경우 비록 양 분쟁당사국 모두 조약 체결국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가간의 협력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대표적 협약이자 중요한 규범성을 띤 협약인 점에서 정보제공과 관련된 본 사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그는 전개 과정의 국제법인 소위 연성법(soft laws)나 EC의 관련 조치 역시 이들이 국제적 관행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역시 본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재재판의 2-1로 결정된 판결문은 비록 중재재판부가 최근의 국제관습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중재재판부는 본 협약 제9조 1항은 아일랜드에게 정보를 수령할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주장에 대해 이를 2-1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9조 1항이 체약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할 국내입법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영국에 그러한 법제도가 있는 한 아일랜드의 구제는 국제법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국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9조 1항 자체를 통해 한 체약국이 타 체약국에게 9조 2항 상의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9조 1항에 의해 수립된 체약국의 국내법절차에 의해 정보를 요구할 권한은 있으며 따라서 9조 1항은 아일랜드에게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소 혼란스러운 본 판결문은 협약상의 의무를 직접적 간

II. 용어 해설

접적 의무로 나누어 영국이 본 조항상 아일랜드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정보를 제공 할 것을 보장하여야하는 의무는 있다고 하여 궁극적으로 영국이 아일랜드가 요청한 정보가 아일랜드에 의해 수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의 원리를 원용하였는데 국가책임은 국내의 기관의 행위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것인 것처럼 본 사안에서도 9조 1항 상의 정보제공의무는 국내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국가책임이 발생 할 소지는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셋째 쟁점은 아일랜드에 의해 요청되었으나 거부된 정보가 9조 2항 상의 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정보는 해양의 상태, 해양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활동이나 조치 또는 본 협약상 취해진 조치나 활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문서화된 것에 한하지 않고 시각적, 청각적 또는 모든 정보화 처리된 형태의 정보를 의미한다. 아일랜드는 동 조항은 활동에 대한 환경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일랜드가 요청한 14개 정보는 그 어느 것도 해양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해양 상태에 발생 할 수 있는 것과 막연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공개될 정보는 우선 “해양상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둘째, 공개될 정보는 특히 해양상태와 관련된 “활동이나 조치”에 관련되어야 하고 셋째, 관련 정보는 해양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이나 조치일 것임을 강조하며 아일랜드는 자국이 요청한 정보가 해양상태에 관련된 정보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보가 해양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이나 조치에 관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하여 본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2-1로 영국의 손을 들

어주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의 기본 논조는 9조 2항의 해석을 알투스 협약이나 지침90/313에서 발견되는 용어인 “환경정보”에 적용되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OSPAR 협약 9조 2항에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없으며 설령 있다할 지라도 아일랜드가 요청한 정보가 그러한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하였다.

■ 소음(Noise)

일반적으로 소음이란 모든 불필요한 음을 가리키나 이에 심리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차도 있고 이해관계등이 얽혀 매우 복잡하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음의 크기는 주파수에 의해 유쾌하게도 불쾌하게도 되며, 여러 가지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킬 때 소음이라 한다. 소음 장애로는 대화나 전화의 청취를 방해하는 것, 일이나 학습 능력을 저하 시키는 것,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키거나, 휴양, 또는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 등이 있으며 인간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침. 인간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해를 끼쳐, 닭이 알을 낳지 못하게 된다거나 젖소가 젖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40dB 정도부터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하여, 70dB 정도면 말초혈관에 수축반응이 일어나며, 80dB 정도에 청력손실에 직접 영향을 줌 대체로 평균소음도가 70dB 이상이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 소음성 난청소음으로 인해 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강한 소리가 나면 일시적으로 난청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소음에 노출된 지 2시간 뒤쯤 생기고 하루 작업이 끝날 때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귀의 신경이 일시적으로 피로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12시간 내지 24시간 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난청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인 난청이 된다.

II. 용어 해설

▣ 스모그(Smog)

Smoke(연기)와 Fog(안개)의 합성어로서 매연과 안개의 공존에 의한 대기 오염을 가리킨다. 로스엔젤리스형 스모그, 런던형 스모그, 런던 살인형 스모그 등이 있다. 공장에서의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이 된 뮤즈(Meuse)계곡 사건이나 도노라(Donora)사건이 있으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이 된 스모그에는 로스엔젤레스형의 스모그가 있다. 가정 난방의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이 된 스모그에는 런던형의 스모그가 있고 일본 동경의 스모그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의 배기가스에 태양 광선이 작용하여 옥시던트로 된 것이다.

▣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

스톡홀름선언이란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Human Environment)의 별칭으로 1972년 6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에서 채택된 국제 문서이다. 전문과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선언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기본 정책 및 원칙을 담고 있다(부록 참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다른 문서로서 109개의 권고문으로 구성된 행동계획(Action Plan) 및 UN에 대하여 제도적 및 재정적 이행을 권고하는 결의안 등이 있다.

▣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에서 결의된 인간환경선언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의 26개의 원칙 중 하나로서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는 국제환경법의 법원칙이다. 타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초국경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21은 국제환경법의 초석(Cornerstone)으로 불리고 있으며 스톡홀름 선언이 채택 된지 20년 후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원칙 2를 통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원칙 21은 전통적으로 국가주권과 연관되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경제주권도 타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한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일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타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많은 국제환경법 학자들은 이 원칙 21의 두 번째 구절에 나타난 초국경오염행위의 금지의 원칙을 국제관습법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역시 원칙 21의 국제관습법적인 성격에 대해 1996년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자국의 관할권과 통제 내에서의 행위가 타국의 또는 자국 영토외의 환경을 존중(respect) 할 일반적 의무가 있음은 환경과 관련된 국제법의 내용 중 하나이다”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국제환경법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즉 일국이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은 확인하고 있지만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떠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 나아가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 국가가 국경을 넘는 활동이나 규제로 인해 환경침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II. 용어 해설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책임의 내용에 대한 학문적인 논란이 있다.

■ 슬러지(Sludge)

수중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진흙상으로 된 것. 오니(汚泥)라고도 한다. 슬러지에는 다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이 어려우므로 모래여과, 필터프레스, 진공 여과기 등으로 처리하여 보다 수분이 적은 슬러지 케이크로 만든다. 이 케이크는 비료로 이용하거나 매립, 소각 또는 해양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습지(wetlands)

습지는 호수에서 육지로 전환하는 생태적 천이단계의 중간단계로서 두 환경의 특성을 공유하며 각종 물질의 전환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생물들이 다양하게 출현한다. 람사협약상 습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fresh)이든 기수(brackish: 약간의 소금기가 있는 물로 담수와 바다가 만나는 수역에 주로 존재)이든 합수이든(salt : 소금기가 많은 해수가 이에 해당) 관계없이 습토(marsh), 소택지(fen), 토탄지(peatland) 또는 수역을 총칭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도 포함된다. 따라서 습지에는 호수, 沼, 간석지, 하천, 댐, 양식장, 산호초 및 논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개발을 위한 매립,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습지의 잠식과 상실을 방지하고 특히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류를 국제적인 자원

으로 중시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1972년 2월 이란 람사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협약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가입을 했으며 현재 106개국에 가입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협약 가입 시 자국의 습지 중 1곳 이상을 람사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6ha 크기의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해 지정되었고, 우포늪도 98년 1월 20일 지정 신청을 해 놓았다. 현재 회원국 전체적으로 약 897개소 전체면적 67,944,292ha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회원국들은 국제적 중요한, 소위[람사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의 지정하는 의무 외에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유지하며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을 조직하고 습지를 국내적으로 자연보호구로 지정·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되나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으로는 특정의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 주요 하천 또는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적 형태를 가진 습지,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로서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 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 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동식물 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및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로서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세계 서

II. 용어 해설

식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습지 등이 있다. 람사(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며 스위스 글랜드에 소재하고 있다.

■ 아황산가스(SO₂)

무색의 자극성 있는 유독기체로서 연료 중에 포함된 황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부식성이 강하며 인체의 상부기도 점막을 자극하여 기침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물에는 잎에 백화현상 등 피해를 주는 등 산성비의 원인물질중의 하나이다.

■ 알데히드

탄화수소기에 알데히드기가 결합된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CHO로 표시된다. 지방족 알데히드와 방향족 알데히드가 있으며 지방족 알데히드의 저급류에는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것이 있어, 악취의 공해원이 된다. 포름알데히드(HCHO), 아세트알데히드(CH₃-CHO)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쓰레기 소각로의 배기중에는 5~150ppm의 알데히드가 함유되며, 악취원인물질이자 포름알데히드는 특히 새집증후군과 같이 아토피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 에콜로지 운동(Ecological Movement)

생태학과는 달리 자연생태계가 가진 의의를 중시하고 그것과 조화된 사회 발전,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으로 에콜로지 운동, 에콜로지 사상, 생태운동, 생태사상 이라고 한다.

▣ 엘리뇨(El Nino)

평상시 적도부근 태평양지역의 바다표면 온도는 날짜 경계선을 중심으로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무역풍(동풍)의 영향을 받아 서태평양 지역은 높고(연중 28℃) 동태평양이 낮은(연중 20℃)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적도부근의 무역풍이 약해질 경우 서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태평양에 위치한 페루연안의 바닷물온도가 평상시 보다 섭씨 0.5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6개월 정도 지속되면 이를 엘리뇨현상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엘리뇨 현상의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엘리뇨가 발생하게 되면 페루를 비롯하여 동태평양 연안의 적도부근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강수량이 줄어들어 가뭄피해를 겪게 된다. 우리나라는 엘리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간접적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등 기상이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의미하며 특히 이 현상이 페루연안에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자주 나타나 “아기예수”라는 의미로도 불리며 엘리뇨와 반대되는 현상인 동태평양 바닷물의 이상저온 상태를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를 의미하는 “라니냐(La Nina)”로 부르기도 한다.

▣ 연성법(Soft Laws)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나 관습법에 반하여 구속력이 있지 않으나 국제법의 실질적 연원으로서 어떠한 원칙이나 규범 및 기준 나아가 기대되는 행위규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외의 국제적 문서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성명, 국제기구가 공포한 행동수칙, 행동계획, 또는 지침 등 비구속적 권고사항

II. 용어 해설

을 담고 있는 결의안 등이 있다. 혹자에 따라서는 협약의 형태를 갖더라도 그 내용이 권고적 내용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는 연성법으로서 구분하기도 한다. 소위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의 형태로 체결되는 국제협약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연성법은 현재의 법(*lex lata*)이 아니라 장래의 법(*lex ferenda*)으로서, 즉 국제환경법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발전되기까지의 과정, 즉 구속력을 부여해가는 국제공동체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soft law를 굳이 연성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성법은 헌법에서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의 용어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제법학자들의 용어 정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연성법은 구속력 있는 협약의 골격협약으로서 또는 조약의 해석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장래의 협약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스톡홀름선언이나 리우선언등은 대표적인 연성법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선언들 중 상당한 법원칙들은 이제 국제관습법의 일부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염화불화탄소(CFC : chloro fluoro carbons)

염소(Cl), 불소(F), 탄소(C)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통칭하며 1930년대 미국의 뒤퉁사에서 개발한 상품명인 프레온으로 알려져 있다. 염소 불소 탄소의 구성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무색, 무취로서 매우 안정된 화합물이고 냉매, 세정제, 발포제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오존층파괴 원인물질로 알려져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 및 생산이 규제되고 있다.

▣ 예치금제도(deposit refund system)

예치금제도는 공해의 저감과 자원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단위당 일정액을 예치하게 하고 대상오염물질을 회수하거나 적절한 폐기과정을 거쳤을 때 이를 반환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수출기업이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위탁처리 및 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비용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오고니(Ogoni)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결정

본 사건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1990년 대 초반 대표적 다국적 기업인 셸 정유회사(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rporation)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나이지리아 국립석유회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mpany (NNPC)에 자국의 원유생산권을 부여하였는데 원유생산과정에서 오고니(Ogoni) 지역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야기하였다. 원유 생산지에서 나온 유해 폐기물들은 아무런 정화 조치 없이 인근의 하천에 투기 되었고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질환, 소화기 및 호흡기 질환, 각종 신경 및 생식 장애등을 야기하였다. 이 지역민들이 이를 정부측에 수차례 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역민들이 결성한 오고니인들의 생존운동(Movement of the Survival of Ogoni People)을 이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야간에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살해하고 지역 마을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프리카 인권단체인 경제 사회적 권리를 위한 행동본부(Action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는 1981년 아프리카 통일기구(OAU)에 의해 채택되고 1986년 발효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아프리카인권헌장) 상 4조의 생명권, 26조의 환

II. 용어 해설

경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아프리카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 나이지리아를 제소하였다. 위원회는 나이지리아의 주민 학살 사건이 본 헌장에 위반됨을 천명하고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오고니 지역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을 중지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의 해당 지역에서의 접근을 보장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원유생산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 및 하천의 복구를 포함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하였다. 그리고 향후 원유 생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보장하고 원유 생산 활동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감시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 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본 위원회는 정부가 자국의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정부와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가 개인 및 공동체의 권리와 공동의 선(common good)에 반하는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를 재고 할 것을 요청하였다.

■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3P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은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대두된 원칙으로서 3P또는 PPP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그 내용은 오염자가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1972년 OECD가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에서는 희소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과 환경투자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오염방지 및 관리조치의 비용분담

에 사용되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원칙은 대다수의 환경선언 및 환경협약에서 국제환경법의 기본적 원칙으로 언급되고 있다.

■ 오존(Ozone, O₃)

오존은 무색의 기체로서 자극적인 냄새가 있으며 공기보다는 약간 무겁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오존은 존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는데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오존층을 형성하여 태양으로 부터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류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호흡기관에 손상을 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물질이기도 하다. 대류권의 오존은 대부분 국가의 환경기준 오염물질로서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NO_x)과 탄화수소류(HC)등이 광에너지(자외선)를 흡수 복잡한 광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 오존경보제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써 1995년부터 서울지역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인천지역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오존경보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등 3단계로 발령하며 오존오염도가 기준 아래로 낮아질 때는 이를 해제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발령기준은 주의보는 오존농도 0.12ppm 이상, 경보는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0.5ppm 이상이다.

■ 오존층(ozone layer)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존의 약90%가 성층권에 존재하며 성층권내에서도 특히 지상 25km 부근에 밀집되어 있어 이를 오존층이라

II. 용어 해설

고 한다. 이러한 오존은 태양자외선에 의해 산소분자가 분해되어 생긴 산소원자와 산소분자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써 오존층은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등 오존과 결합하는 물질의 배출이 증가되면서 급격히 파괴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는 태양자외선 중 생체에 유해한 파장의 성분(UV-B)을 흡수하는 역할이 약화되어 인체에 피부암, 백내장 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다른 생물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작물의 수확 감소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체결되었다.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1985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 원인물질의 규제에 대한 것을 중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 1974년 F. Sherwood Rowland 박사에 의해 오존층 파괴문제가 제기된 후 UNEP를 중심으로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1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실무단을 구성, 1983년 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1985년에 비엔나에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선언적인 협약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오존층 보호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오존파괴지수

어떤 화합물질의 오존파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서 숫자가 클수록 오존파괴정도가 크다. 삼염화불화탄소(CFC13)의 오존파괴능력

을 1로 보았을 때 상대적인 파괴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정한 모든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해 오존층파괴지수가 산정되어 있다. CFC 계통은 오존파괴지수가 0.6-1.0이고, 할론계통은 3-10으로 매우 높으며, CFC 중간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계통은 0.001-0.52로 낮다.

■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온실가스란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있다.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로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일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프레온: CFC: chlorofluorocarbon)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기체이다. 이러한 기체들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매년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인간이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된 화석연료에 의해 그 양은 크게 늘었다. 1750년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31%가 늘어나서 2003년에는 376ppm의 양이 대기 중에 존재했다. 이는 남극 빙하 속의 이산화탄소 양을 통해 측정한 과거 65만년 동안의 어느 시대에서보다 높은 양이다. 온실기체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그다지 유발하지 않는 편에 속하며, 같은 농도의 메탄에 비해 약 20배 정도 그 효과가 약하다. 온실기체로서의 메탄은 현재 연간 2억 5천만 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메탄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에도 발생하지만, 비료나 논, 쓰레기더미에서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초식동물이 풀을 소화시킬 때 호흡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

II. 용어 해설

구가 늘어나고 식량 생산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메탄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툰드라 지방의 땅이 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지면 메탄을 방출할 것이라는 이론과,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지만 이러한 이론은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지 않다.

■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제도(Tradeable emission permits)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그 한도치까지의 배출은 권리로서 허용하고, 그 한도치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에서 추가적인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며, 그 한도치를 못 미치는 경우, 외부에 잔여량을 판매하게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도 참조.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

지구의 대기공간에서 우주로의 방사열 감소로 지구 대기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며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가 지구대기층을 마치 우산으로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싸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도록 하고 있다. 온실효과의 원인물질로는 주로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질소(NO₂) 등의 탄산가스와 메탄(CH₄), 염화불화탄소(CFCs) 등이 있으며 이중 CO₂가 55%의 온실효과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농업생태계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여 지구변화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온실효과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 6월,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12월에 채택되었다.

▣ 위험성(Risk)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해결과의 크기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의 조합으로 위험성의 평가(Risk Assessment)와 위험성 관리(Risk Management)가 국제환경규범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개발위원회의 공식명칭은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이다. 이 위원회는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47/191)에 따라 설치되었고, 1993년 2월 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을 이사국으로 선임하였다. 동 위원회는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및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 위원회의 사무국은 뉴욕에 소재하고 있다. 회의는 매년 1회 2-3주간 개최되며, 매년 CSD 회의 후반 2-3일간을 고위급회의(high level segment)로 개최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회의로서 공식명칭은 UNCED(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이라고도 칭한다. 또는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리우 정상회의라고도 불린다. 회의는 80년대 후반의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II. 용어 해설

국제질서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행동계획을 채택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178개 국가가 참석하였으며, 그 중 118개국에서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식 국무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리우 정상회의의 부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Prepcom: Preparatory Committee)는 90년 3월 열린 조직회의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준비과정에서 3,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사무국 문서를 생산함으로써, 광범위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반증하였다. 리우회의에는 정부대표의 대거 참석과 병행하여, 국제환경기술박람회, 세계도시회의, 국제언론가 대회, 국회의원대회 및 각종 비정부간 기구가 주관하는 행사들이 개최되어,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협의하였다. 특히, Global Forum의 주관하에 정부간 대표회의와 병행, 개최된 각종 NGO 행사에는 6,000여 민간대표들이 참석하여, 정부대표들이 합의한 의제 21에 상응하는 NGO Treaties등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결의에 의한 권고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에 제27회 유엔총회가 결의하여 설립한 유엔기구로서 본부는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있다. UNEP의 목적은 (1)환경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추진 (2)유엔 여러 기관의 환경관련 활동의 정책 작성 (3)세계의 환경감시 (4)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의 입수 등임. 현재 안고 있는 주요한 과제는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지구규모의 환경오염 및 사막화의 진행, 열대우림의 감소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비롯하여 육상 생태계 보호, 환경과 개발, 인구의 급증, 빈곤 등에 따른 환경문제, 환경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 인간 거주지의 건강, 국제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지구환경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환경상황 파악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다. UNEP는 다른 유엔 기구,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NGO), 각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UNEP 기구는 유엔총회에서 선출된 58개국(임기 3년으로 구성된 UNEP 관리이사회, 동사무국 및 UNEP의 활동 자금을 대는 유엔환경기금(각국의 임의 각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UNEP의 기본 방침은 관리이사회에서 결정되고 결정사항은 UNEP 본부 등 전문 직원(약 2천명)에 의해 실시된다.

▣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이란 재조합 DNA 실험이나 DNA 클로닝 등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는 학문 분야를 총칭한다. 1970년 이후 분자유전학의 발전, 특히 재조합 DNA 실험기술의 개발을 계기로 원핵생물에 한하지 않고 고등동물로부터도 다수의 유전자가 분리 되고 그 구조나 기능을 상세히 해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인공 유전자의 합성이나 분리한 유전자 DNA를 인위적으로 변조하는 기술, DNA를 세포내에 높은 효율로 도입하는 기술, 또한 특정한 유전자 산물을 세균이나 호모로 다량 생산시키기 위한 기술 등이 차례로 개발되어 왔는데 이런 기술은 DNA 정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분자생물학 뿐만 아니라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면역학, 바이러스학 등의 다방면에 걸치는 분야의 기초연구로부터 유전자산물의 공업적 생산이나 생물육종 등의 실용과 결부된 응용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초래하고 있다.

II. 용어 해설

■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동·식물, 미생물 또는 기타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로서 유전기능을 가진 유기물의 한 부분은 실제적, 잠재적 가치여부에 상관없이 그 의미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종자, 잡수, 정자 혹은 개개의 유기물 등이 포함되며, 식물, 동물, 미생물에서 추출한 염색체, 유전인자, 박테리아, Plasmid와 같은 DNA도 포함되며 혹은 이러한 것들의 일부분도 포함되나, DNA를 갖고 있지 않는 생화학적 추출물은 포함되지 않다.

■ 유전자(Gene)

유전자란 생물체의 유전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핵산으로 구성된 기능적인 단위(functional unit)를 말한다. 생물 세포내의 염색체에 들어 있으며, 개체별, 집단별로 유전자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수많은 과정을 조절하고 생물들이 물질적 외적발현을 하는 수많은 속성에 관여한다.

■ 유전자교환(Gene Exchange)

종간 잡종에 의하여 생식가능한 자손이 생산됨으로써 잡종 개체군 내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유전자의 상호혼합을 말한다. 1973년 미국에서 개발된 방식으로 재조합 DNA 기술이라고 하며 바이러스 등을 운반하는 벡터에 외래의 DNA를 결합시켜 세균이나 동식물 세포에 유입시키는 것이다.

■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

살아있는 세포 또는 생물체의 유전물질을 변경시키어 유효한 신물질의 생산 또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이다.

▣ 유전자원 원산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 유전자원 제공국(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의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유전적 변이가 풍부한 생물집단의 총칭.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 지구상에는 5백만-1천만의 생물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과학적으로 해명된 것은 1백40만종에 불과하다. 야생의 동식물종은 농업(작물이나 가축의 품종 개발), 의료(의약품 등), 공업(공업원료)에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아마존의 열대림에 있는 의학상, 영양상 가치가 높은 유전자 자원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 유전자은행(Gene Bank)

생물의 다양한 유전자를 장기간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 개체, 종자, 알 등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유전자원이 되는 재래종·계통·품종·야생종·유전계통 등을 조직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기관이다.

II. 용어 해설

▣ 유해(Hazard)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생물체의 잠재력을 말한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협약의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이다. 바젤협약은 1980년 초 구미선진국들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이 아프리카 개도국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규범 채택 필요성이 유엔 환경계획(UNEP) 등에서 논의되어 89년 3월 채택되었으며, 92년 5월 발효하였다. 동 협약은 유해 폐기물 수출 금지, 수출시 수입국의 사전동의,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등 당사국의 의무와 불법교역 폐기물 및 불법 교역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부속서에 규제대상 폐기물의 종류(방사성 폐기물, 선박해해중 발생 폐기물 제외 총 47종)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이 유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유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극소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유해 폐기물 관리정책과도 부응하는 점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1994년 2월 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의 경우 폐기물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실정이므로 협약가입은 유해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에 도

움이 되며 아울러 협약을 통해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선진기술 도입 등 기술교류도 가능하다. 한편 협약가입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없는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의무, 유해 폐기물 등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본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등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는 의무, 비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는 의무, 유해 폐기물 등의 국가간 이동에 관련 서류가 수반되도록 의무화, 유해 폐기물 등의 국가간 이동이 불법거래에 따른 경우 또는 계약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 또는 처분을 포함한 적당한 조치를 확보하는 의무, 그리고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한 유엔기준에 의한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부담한다.

▣ 의제 21(Agenda 21)

의제 21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이다. 의제 21은 리우선언의 세부행동지침의 성격을 띤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써 전문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우 선언에도 설명했듯이 리우 선언이 모범이라면, Agenda 21은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셈이다. Agenda 21의 전체적인 구조는 전문(Preamble)과 4개 Section(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차원을 다루는 제1부는 7개장으로,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를 다루는 제2부는 14개장으로,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를 다루는 제3부는 9개장으로 이행방안을 다루는 제4부는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Agenda 21에서 취급하는 의제는 38개나 되며, 상세한 구조는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Agenda 21의 각 개별의제는 실천기반, 목표, 활동사항 및 이행방안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II. 용어 해설

되어있으며, 활동사항은 다시 관리(Management)문제, 자료 및 정보, 지역 및 국제협력 등 세부사항으로, 이행방안은 재정지원, 과학기술적 지원, 인적자원개발과 시행능력 형성 등 항목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Agenda 21의 주요분야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개최결과와 유엔총회 결의(44/228)에 열거된 각 토의분야를 확대발전 시킨 것으로서, 지구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각계각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한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Agenda 21은 구속력 있는 법규범은 아니지만, 각 의제가 아주 세부적인 정책지침을 제공하고, 향후에 취해야 될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감안, 각국은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각 실천계획의 내용교섭에 있어 참여한 대립을 보인 바 있다. 4차에 걸친 UNCED 준비회의 토의에서 Agenda 21의 각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 대기, 토지오염,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유해폐기물, 독성화학물질, 해양 등 각 환경사안별 대응방안과 빈곤퇴치, 인구, 인간정주, 보건등 공동사안(사회, 경제적 측면)별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합의된 초안 작성을 하였으나, 재정문제, 기술이전문제 및 제도문제 등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참여한 의견대립으로 회의정상회의 기간 중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 되었다.

▣ 이동오염원(non-point source)

이동오염원은 고정오염원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이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점오염원이라 직역되어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의미를 살리는 측면에서 이동오염원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이동하면서 배출가스에 의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소음을 내어 소음공해를 일으킴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지이며 선박도 이동하면서 기름과 폐기물을 배출하고 해양오염을 일으키므로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공장과 사업장은 고정된 위치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고정오염원이라고 한다.

■ 이타이이타이병

이타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아프다는 뜻으로 1960년대 일본의 부산현 신통천 유역의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카드뮴 등의 중금속 중독으로 인해 당시 원인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아프다는 말은 하며 죽어가 이름을 얻은 환경질병이다. 후에 그 원인은 인근의 광업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이나 아연원광을 채굴·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수와 제련과정에서 나온 광석 찌꺼기가 쌓여 물에 씻겨 내려온 폐수 속에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금속이 포함된 물이나 그 물로 자란 벼 등으로 인해 체내에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이 일어났다. 이 병의 초기증세는 허벅지, 허리 등에 통증을 느끼고 이 통증은 수년 내지 10년 사이에 점차 온몸으로 확대되어 오리와 같이 뒹뒹뒹 걷다가 이어서 보행하기가 곤란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진다. 나아가서는 골격이 변화되고 키가 작아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이타이이타이” 신음을 내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

■ 이황화탄소(CS₂)

상온에서 무색투명하고, 휘발성이 강하면서 일반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유독성액체로 공기 중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황색을 띤다. 그 화학적 성질이 비교적 불안정하여 상온에서도 빛에 의해 분해되며, 인화되기 쉽고, 일단 불이 붙으면 청색의 불꽃을 내면서 이산화황의 자극성 냄새를 발생한다.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과 셀로판(cel-

II. 용어 해설

lophane) 제조과정 중에 사용되거나 사염화탄소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피부에 대한 독성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따끔따끔함을 느끼며, 완전히 증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통을 일으키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중독 증상은 알콜, 클로로포름 등의 마취작용과 비슷하고, 통상 흥분상태를 거쳐 마비상태로 되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 인간(Human)

인간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우선 스톡홀름선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만물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환경의 창조물인과 동시에 형성자라는 인간중심적 견해와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생태학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개념이 상호 존재하고 있다.

■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113개국 대표가 모여 세계적으로 환경위기에 처한 지구를 보전하는데 전지구인이 다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선언으로 스톡홀름선언이라고 불린다. 환경에 관한 인권 선언으로 비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1973년에 환경관계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기구(UNEP)가 창설되었다.

■ 자연(Nature)

인위적 요소가 첨가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상태. 인간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변경이 없이 스스로의 생성과 전개에 따라 성립된 상태를 자연이라 하고 인간계에 대응하여 천지만물이 존재하는 범위

를 자연계라 한다. 태양, 대기, 바다, 육지, 호수, 사막은 자연환경이고 기상변화, 화산의 분화, 지진은 자연현상이며 홍수, 파도, 지진 및 화산폭발에 의한 피해는 자연재해이다.

▣ 자연보전(Conservation of Nature)

환경보호의 기본적 이념으로 두 가지 다른 기조가 있다. 첫째, 인간 이외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즉 자연의 존재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과 둘째, 자연의 사용가치, 즉 자원으로서의 유용성,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인간에게 보다 나은 이용 수단으로 자연보호를 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자연을 보호, 보전한다는 표현 자체가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에 의해 생명을 잇고 있다는 인식에 어긋난다고 하여, 혹은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라는 의식을 이면에 깔고 있다고 하여 반대하는 생태주의적 입장도 있다.

▣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자연을 인간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로 간주하여 수자원, 삼림자원, 수산물자원, 광물자원, 화석연료, 관광자원 등 다양한 자원으로 분류하여 개념 지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반드시 경제적인 용도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자체로서 자원이 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림자원은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위약한 표토(특히 열대우림의 경우)의 유출방지 기능, 다양한 생물종 보전 기능, 생명공학에서 필수적인 유전자 자원을 유지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환경보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II. 용어 해설

▣ 자연주의자(Naturalist)

자연을 옹호하는 사람 및 학자 등을 말하는데 자신이나 인간의 이해만이 아니라 동식물 등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인간의 이해보다 자연에 우선권을 두는 경우도 있다.

▣ 자정작용(Self-purification)

오염 상태가 자연 스스로의 힘에 의해 정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천에 더러운 물이 유입되면 희석 침전이 행해지며 유기물은 화학적 또는 미생물의 매개에 의해 분해되어 정화된다. 이러한 자정작용은 오염된 부근의 자연의 크기나 청정 정도에 따라 다른데 자연스스로 복원하는 힘을 자정능력이라 하고 자연의 자정능력의 보유 크기를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라고 한다. 따라서 자정능력이 큰 지역은 환경용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재활용(Recycling)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Recovery)과정과 재사용(Reuse)을 포괄하는 것으로 물질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물질순환계로 재투입하는 개념을 말한다.

▣ 저개발(Under-development)

일반적으로 저개발은 상대적인 개념이나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만큼 개발상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국제환경법에서는 이를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스톡홀름선언 전문에서는 저개발을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 교육, 건강, 위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인간으

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최저수준을 훨씬 하회하는 생활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문제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무분별한 개발의 반대급부로서 발견되곤 한다. 따라서 저개발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저개발 자체는 환경문제보다는 위생문제의 원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

▣ 적조현상

플랑크톤의 이상증식으로 물이 붉게 물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상 증식된 플랑크톤이 죽어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플랑크톤 자체의 독성 때문에 적조현상이 나타난 지역의 어패류는 죽게 된다.

▣ 제품부담금(product charge)

제품부담금이란 제품의 생산, 소비 및 폐기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환경세로서 오염행위에 관련된 상품 가격의 인상요인을 제공하여 소비를 억제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환경세로서 각종 탄소세/에너지세뿐 아니라 CFC함유제품, 일회용품, 배터리, 살충제 등에 대한 제품부과금 등이 있다. 동 부과금이 국내외 상품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무역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자국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보호주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 종(Species)

생물명명법상 생물분류의 기본단위. 자연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상호 교잡할 수 있는 생물의 집단(population)을 말한다. 분류학적인 의미에서

II. 용어 해설

는 생물의 계급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수준의 하나로서 아종(subspecies)의 상위개념이고, 속(genus)의 하위개념이다.

■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

종 다양성이란 서로 다른 종의 빈도와 다양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수-개체수의 관계로부터 본 군집구조의 복잡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이용되며, 서로 다른 각각의 군집에서 같은 수의 개체수를 갖는 작은 표본(sample)을 임의로 취하였을 경우, 표본(sample)에 포함되는 종수가 많은 군집은 종수가 적은 군집에 비해서 복잡(다양)하다고 간주된다. 지리적 분포 범위 안에서의 종의 다양함을 설명하며, 종 풍부도를 추정하거나 서로 다른 종과의 관계에 의하여 종다양성을 측정(종수가 같을 경우 비슷한 유연관계를 지닌 종이 많은 곳보다 적은 곳의 다양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종의 다양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종보다 하위수준, 아류종이나 개체군 수준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종 그 자체도 안정성을 잃고 쇠퇴하게 된다.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태양복사에너지(자외선)가 먼저 1차적으로 염화불화탄화수소 가스(Chlorofluorocarbons, CFCs) 등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지구 대기권위의 성층권에서 오존층 파괴로 인한 여과없는 태양광의 직접적인 지구 조사에 의한 지구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기타 에어로졸 입자등 소위, 지구온실효과(green-house effect)가스의 사용에 따른 대량방출로 대류권(지표에서 10~15km)으로부터 지구표면에 이르는 태양 에너지가 그 일부가 적외선 에너지 형태로 대류권 경계를 통해 다시 지구 밖으로 그 에너지가 방출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들이 지구의 대류권 윗

부분에서 하나의 온실과 같은 막을 형성하여 그 에너지 방출을 막음으로써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 지구의 날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 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처음으로 선언한 것에서 유래한다. ‘1970 지구의 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조직된 시위였다. 2,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하여 연설을 듣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하였다. 뉴욕 5번가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6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센트럴 파크에서 열리는 환경집회에 참여하였다. 이후 환경문제가 서서히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1972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하나 뿐인 지구”라는 제목 아래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가 열려 전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여전히 경제성장에 밀려 환경오염은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되었다. 그 증거는 20년 동안 ‘지구의 날’과 같이 환경위기를 환기시켜줄 행사가 중단되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1990년에 환경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에 힘입어 제2회 대회가 전세계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1990년 지구의 날’ 행사는 ‘Earth Day 1990’ 미국 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세계 100개국, 500여 단체가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해추방운동연합’, ‘대한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한국 천주교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한살림모임’ 등 6개 단체가 공동주최하였다. “이 땅을, 이 하늘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라는 구호 아래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국토”, “하나뿐인 생명”등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념식, 걷기 대회, 선언문 낭독, 문화행사가 남산 전역에서 펼쳐졌다. 이후 매년 민간환경단체 주관으로 4월 22일에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II. 용어 해설

▣ 지구환경 모니터링 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 GEMS)

유엔환경계획(UNEP) 사업의 하나로서 환경의 합리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보건기구(WHO)등의 협력에 의해, 열대림등의 재생가능자원, 기후변화, 오염물질등의 건강요인, 산성비등에 관계되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해양환경등에 관한 감시를 행하고 있다.

▣ 지구환경금융(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0.10월 UNEP, UNDP, World Bank를 집행기구로 설립되었다. 30개국이 총 13억불의 기금을 출연하여 시험단계(Pilot Phase : 1991.7-1994.6)를 거친후, 1994년 3월 구조를 개편하여 총 20억불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합의하고 제1기 GEF('94.7-'97.6)를 발족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11일 가입하였다.

▣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은 국제환경 분야에서 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주요 명제로서 자리잡고 있는데 혹자에 따르면 본 개념은 각 분야별 정책적으로 수천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환경법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따 소위 브룬트란드(Brundtland) 보고서라고도 지칭되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이사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보고서는 이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 보고서는 본 개념의 핵심을 경제 개발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고려해야한다는 특히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현재의 세대와 다음 세대간의 형평의 개념을 부각하였다.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의 제15차 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생태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 합리적 사용등은 물론 국내 및 국제적인 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환경을 고려한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민주주의, 환경, 인권, 평화, 안보등을 망라한 전체적 사회의 통합적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 본 용어를 해석하는데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원래 부른트란드 보고서에서는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어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그 원래의 의미를 되살려 친환경적이자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이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본 개념의 핵심이 환경과 경제개발, 양자의 조화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이자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용어를 양자의 조화 속에서의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속가능한 개발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지속가능한 개발지표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환경현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각국의 지속가능성을 비교·평가하고, 정책결정

II. 용어 해설

자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료한 모델이나 기준을 말한다. UN 사무국내 정책총괄 및 지속개발국(UNDOCS)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목록(methodology sheet)을 작성하여 사회·경제·환경·기관(Institutional) 지표로 크게 분류하고, 각 지표를 「의제 21」의 40개 장과 연계시킨 후,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상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Sustainable products & consumption patterns)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최적 활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생산의 효율성 확보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NGOs, 가계 등 경제주체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효율성 제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개인 및 가계의 환경친화적 구매, 정부조달정책의 개선, 환경부합적 가격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시키면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인정하여 생물자원이 무한하게 지속될 수 있게 자원감소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생물다양성의 요소에 해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생물다양성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 참치·돌고래 사건(Tuna-Dolphin 사건)

미국의 수입참치통조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이유로 수량제한을 가하여 발생한 국제분쟁이다. 미국은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을 제정하여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어부들로 하여금 참치를 잡을 때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숫자를 줄이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미국 선단에 대하여 1년에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숫자가 20,5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치조업을 허가해 주었다. 한편 MMPA는 미국의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포유동물을 부수적으로 잡거나 죽이는 어로방법을 사용하여 잡은 어류나 그 가공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참치를 잡은 외국의 선박들이 미국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참치조업 중 부수적으로 잡은 해양포유동물의 비율이 당해 년 도에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한 미국의 선박들이 부수적으로 잡은 돌고래 비율의 1.25배를 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어떤 특정국가에 대하여 참치 및 그 가공물의 수입을 금지한지 90일 후에는 중개국가(intermediary nation)가 직접 수입금지대상이 된 국가로부터 참치와 그 가공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중개국가로부터의 참치와 그 가공물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직접적인 수입금지 또는 중개국가에 대한 수입금지가 발효된지 6개월 후에는 어민보호법 펠리수정안(the Pelly Amendment to the Fishermen's Protective Act)에 의거, 대통령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수입금지가 GATT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된 국가들로부터의 모든 어류 및 야생동식물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MMPA에 의거,

II. 용어 해설

1990년 8월 28일 태평양동부적도지역에서 건착망을 사용하여 잡은 멕시코산 참치와 그 가공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으며, 1991년 5월 24일 그 수입 금지를 중개 국가에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멕시코는 GATT에 미국의 참치수입금지조치가 GATT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제소하였고, GATT 분쟁해결패널은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참치 수입 금지 조치는 GATT 제11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패널의 보고서는 GATT 위원회에서 채택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그 당시 멕시코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멕시코가 동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은 GATT 위원회의 위 보고서 채택 없이 끝나게 되었다.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과 공동이행(JI)을 통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담금(User fee)을 납부토록 하여, 이를 청정개발체제 운영비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예의 적응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저오염 및 저공해 공정기술(Low pollution technology)로 통칭되며, 사후처리기술(End of pipe technology)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존의 사후처리기술로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더 이상 저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공정을 개선하여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기술을 말한다.

▣ 초국경환경책임

초국경환경책임이란 일국이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 가해국의 책임을 말한다. 스톡홀름 원칙 21 및 리우원칙 2에서 재차 확인된 바와 같이 초국경환경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은 확보되었지만 그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바 없다. 즉,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떠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 나아가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 국가가 국경을 넘는 활동이나 규제로 인해 환경침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선 책임의 내용에 대해 문구대로 해석한다면 다음 두 가지 책임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국가는 자국의 행위가 자국 영토외의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자국 영토외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고, 둘째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국영토외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할 책임 즉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는 책임이 없다는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 해석을 둘러싸고 첫 번째 해석에 따라 모든 초국경오염행위는 불법으로 책임이 수반된다고 하는 경해도 있지만 원칙 21의 다음 모델인 리우 선언의 원칙 2의 해석에 있어 유엔사무총장은 “리우 선언 원칙2의 범위와 적용대상 역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모든 초국경오염피해가 금지되거나 불법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여 첫 번째 해석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는 모든 초국경오염행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은 현재 국제관행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법과 현실의 조화를 위해 또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그 책임의 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원칙 21의 원 문구상 “모든 피해” 대신 “심각한 또는 중대한 피해(significant

II. 용어 해설

or substantial damages)”만으로 해석하여 타국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의견과 또는 원칙 21의 의무가 결과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그 의무 수행상의 의무로 절차상의 적법한 (due diligence) 주의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다. 원칙 21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고 해도 그 정확한 의미 전달에는 역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써 우선 어느 정도가 중대한 피해로 간주되어야 할지 그리고 절차상의 적법한 주의의무는 무엇이며 그 의무 수행을 다했는지는 여부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Tulane 법과대학의 군터 한들(Gunther Handle) 교수에 의하면 원칙 21의 의무를 구체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의무로 상세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그 의무를 국가가 타국의 영토나 자국 외의 영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취하기 전에 (i)국경을 넘어 갈 수 있는 잠재적 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고, (ii)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국가에게 이를 통지하며, (iii)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그 해당국가와 협의를 해야 할 세 가지 의무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의무를 종합하면 초국경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왜냐하면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당해 추진 사업이 타국에 영향을 미칠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므로 그 통지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추진 사업이 타국의 환경에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초국경환경영향평가와 원칙 21의 관계는 원칙 21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초국경환경영향평가가 국가로 하여금 위대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정 사업에 있어 초국경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그 의무위반이 될 것이나 만일 그 본질적인 의무가 적법한 절차상의 주의의무라면 초국경환경영향평가의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원칙 21의 의무위반은 없는 것이고 만일 비록 환경영향평가는 했다 할지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적법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원칙 21의 의무위반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칙 21이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권 내의 행위로 인해 국경을 넘는 중대한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절차상 적법한 주의의무”로 이해된다면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범위 및 그 절차성에 비추어도 원칙 21의 책임은 초국경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책임이라는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뉴욕 Pace 법대의 Nicholas A. Robinson 교수 역시 환경영향평가는 일국에게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국내의 개발행위를 자체해야 하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하면서 원칙 21과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

▣ 초국경피해 손실분배 가원칙(Draft principles on the allocation of loss from transboundary harm arising out of hazardous activities)

본 가원칙은 다음 항의 초국경피해 예방규정초안에서 다루지 못한 보상 책임을 다룬 문서로서 2001년 유엔 총회는 총회결의 56/82호를 통해 위원회에 기존에 연구된 예방적 조치 외에 보상책임의 문제를 각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법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연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유해한 활동으로 인한 초국경 피해에서 발생한 손실의 국제적 배상(international liability in the case of loss from transboundary harm arising out of hazardous activities)”이라는 소제로 시작된 연구는 2004년 7월 9일 제 2815차 회기에서 실무단장의 구두보고 후 8개 가원칙을 drafting committee에 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5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8개 가원칙에 대해 2006년 1월 1일까지 각 정부에게 유엔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2006년 8월 58차 회의에서 전문 및 8개 원칙을 채택하였다. 전문은 1992년 리우 선언 및 2001년 유해행위로부터의 초국경피해의 예방규정초안 등 기존의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확인하였는데 특히 리우 선언의 원칙으

II. 용어 해설

로 환경오염이나 환경피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내 법 및 국제법 발전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와 오염자부담의 원칙 등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유해행위로부터의 초국경피해의 예방 관련 의무를 관련국이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유해행위 관련 사고는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고의 결과로 피해나 심각한 손실을 입은 자연인이나 국가를 포함한 법인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인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가 그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취해질 수 있도록 사인에게 보험 및 배상을 담보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마련하고 국가는 이러한 사인의 배상 책임에 대해 2차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국경피해를 초래 할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인국은 즉각적으로 해당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게 해당 사건의 발생과 초국경피해의 발생 가능 영향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며 운영자와의 적절한 참여 속에 적합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인국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국가들과 상의하고 초국경피해를 줄이거나 가능하면 제거할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역시 초국경피해를 줄이거나 가능하면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제 3국 역시 적절할 경우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요건 하에 적합한 국제기구나 타국의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해 활동의 특별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존의 국제협약의 중대함을 상기하고 향후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원칙에서는 “본 가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들은 국적, 주소지 및 거주지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피해자 비차별원칙을 담고 있다.

▣ 초국경피해 예방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년 국가책임규정초안은 국제의무에 위반되는 국가행위의 책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규정초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환경피해는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법위원회는 비록 국가의 일정행위가 비록 국제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 할지라도 타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소추하는 방법을 고안하여왔다. 국제법위원회는 1978년 처음 소위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 결과에 대한 보상책임”을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뉴질랜드 출신의 Rober Q. Quentin-Baxter 교수를 초대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였다. Baxter 특별보고자는 본 주제를 일반 국가책임체제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국가 경제행위의 자유와 타국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 양자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염두에 둔 예방 및 보상에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 Baxter 특별보고자는 5차례의 보고서 작성을 통해 국가행위의 자유와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 양자의 문제를 비록 그 손실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국의 행위로 인한 타국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국제법상 도입하였다. 예방과 보상 의무를 포함한 국가의 의무는 이익형량 이론(balance-of interest test)를 근거로 하였는데 이는 모든 국가는 자국이 추구하는 활동에서 나오는 이익이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국가의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됨을 고려하여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본 테스트는 지속적 발전이라는 국가의 공동관심사항과 자국의 국내지역경제활동의 중요성, 자국민이 자국 밖으로부터 기인한 피해나 손실에 대해 자국민을 보호함을 보장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

II. 용어 해설

로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Baxter는 국가책임에 관해 위원회가 채택한 1차 의무와 2차 의무를 나누는 이원적 의무개념을 채택한 것과 달리 복합 1차 의무(compound primary obligation)이라는 단일의무개념(a single obligation concept)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1차의무는 단계별로 나누어 (i) 가능한 한, 손실이나 피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ii) 예견가능한 손실이나 피해의 종류 및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 지표를 포함한 모든 가능 관련 정보를 피영향국에게 제공할 의무, (iii) 피영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교섭 할 의무, 마지막으로 (iv)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들 국가의 공유기대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조는 1985년 제2대 특별보고자로 임명된 Julio Barboza에 의해서도 이어졌는데 그는 1990년 일반규정, 원칙, 예방, 책임, 민사책임으로 구분하여 총 33개 조항의 완성된 초안을 제시하였다.

본 초안은 보상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예방조치 규정에 각 국가에게 환경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부과하였다. 이는 비록 국제사회가 지구의 공동자산(global common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물질이나 특정한 결과에 대한 엄격보상(strict liability)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막연한 의무를 국가들이 수락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제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33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은 초국경환경피해의 책임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들에 대해 자기의 관할지역상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타국의 관할지역내에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과, 둘째 관할지역내의 활동으로 인해 타국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책임이

다. 따라서 국가가 주의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나아가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환경법에 무과실 책임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란 속에 1992년 국제법위원회는 예방조치와 보상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뜨거운 감자인 보상책임의무를 따로 떼어내고 예방조치의무만을 우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여 예방조치의무는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손해의 방지”(Prevention of transboundary damage from hazardous activities)라는 소제목으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이 주제에 대해 안드라(Andhra) 출신의 라오(Pemmaraju Sreenivasa Rao)씨를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였다. 라오 특별보고자는 연구범위를 두 가지로 상정하여 하나는 가능성은 적지만 재앙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의 행위(activities with low probability of causing disastrous transboundary harm)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행위(activity with a high probability of causing significant transboundary harm) 양자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3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국경을 넘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국에게 “위해관리”, “협력” 및 “타국가와의 협의”와 관련된 의무에 중점을 둔 17개 규정을 담은 초안이 작성되었다. 마침내 2001년 53차 회의에서 2개 조항이 추가된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이 2001년 국가책임협약초안과 함께 채택되었다. 본 규정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방과 협력이라는 명제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는 스톡홀름선언 이래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예방의 원칙 및 협력의 원칙을 본 위원회가 1차적 규범상 책임의 법리로 인정한 것이다. 나머지 초안의 규정들은 대부분 이러한 두 원칙을 이행하거나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II. 용어 해설

▣ 총량규제

일정 지역 내의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환경보전 상 허용가능한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 등에 대해 오염물질의 허용배출량을 배분하고, 이 양을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해진 규제방식이다. 원래 이들 법률에서는 개개 공장 등의 배출기준(또는 배수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제로는 지역이 바라는 환경상의 조건, 즉 환경기준을 유지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그 해결수단으로서 총량규제를 행하게 되었다. 공장 또는 사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염상태가 현저해져 환경기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지 농도만의 규제가 아니고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량의 물에 의해서 희석시켜 규제농도 이하로 해서 배출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

▣ 트래픽(TRAFFIC International)

1976년 IUCN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82년 초 IUCN과WWF의 공동사업으로 발전되어 대부분 WWF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원명은 Trade Records Analysis of Fauna and Flora in Commerce로 동 식물의 불법교역에 대한 조사, 감시, 보고활동을 담당하고 야생 동 식물의 교역, 보전정책 수립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지역사무소(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동남아시아 등)와 국가사무소(미국, 일본 등)를 18개국에 두고 있다.

▣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

본 사건은 1930년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초국경환경오염사건으로 환경책임에 관한 초기의 사건으로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캐나다에 위치한 민간 제련소인 트레일사가 미국영역내로 유해가스를 방출하면서 발단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으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캐나다 내의 콜럼비아 강 부근에 위치한 이 제련소는 납과 아연을 대량 제련하고 있었는데 제련과정에서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었고 이 중 상당량이 콜럼비아 강의 계곡을 따라 미국의 인접주인 와싱턴 주에 날아와 사과농장 등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미국 내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내법정에 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입증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국 정부에게 그들을 위해 개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미국은 캐나다와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국제혼합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를 설치 사실조사를 위임한 결과 트레일사가 1931년까지 미국민에게 미친 손해액이 350,000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조사서를 보고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손해배상액은 1931년도까지의 피해액이며 계속되는 손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향후의 손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며 혼합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국은 1935년 4월 15일 이 사건을 자국민 각각 1인과 중립국 출신의 1인 총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재재판소는 1931년도까지의 손해액 350,000 달러 외에 1932년부터 1937년 10월 1일까지의 손해액 78,000달러를 추가로 캐나다가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937년 10월 이후 트레일 제련소가 손해를 끼칠 우려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1932년 1월 1일부

II. 용어 해설

터 트레일사로부터 워싱턴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향후의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특정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이와 관련 아황산가스의 최대 허용배출량을 규정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해 제련소가 앞으로 적용해야 할 각종 통제장치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장치들을 성실히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 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 제련소가 비록 중재재판소가 제시한 통제수단을 적절히 준수하는 등 손해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미국은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연간 7,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레일 제련소에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사례는 초국경오염사건에 있어 과거의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은 절대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오염행위의 원천국은 그 행위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초국경적 환경침해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국가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데는 의미가 깊지만 현재 국제관행상 이러한 판결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는 사인인 트레일 제련소와 사과농장주들의 사실상 민사소송이었고 민사소송의 법리상 현재 무과실책임을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것에 불과하며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위해서는 즉 국가의 사인에 대한 주의,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전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려면 우선 국가가 자국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사인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인데 이

를 입증할 책임이 피해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의 책임을 국가에게 전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페놀

석탄산이라고도 한다. 무색의 결정. 물에 녹으며 약산성. 방부제, 소독제로 쓰이며 피크린산, 의약품료등의 제조연료로 이용된다. 화학공장 석탄가스, 코우크스 제조공장의 배수 중에 함유된 피부에 접촉되면 발진이 생기고 체내에서는 소화기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킴 상수에 이 물질이 섞이게 되면 상수중의 염소와 반응을 일으켜 클로로페놀이 되어 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며 미량일지라도 악취가 난다.

■ 폐기물예치금제도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 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 처리한 경우 회수, 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등에 대하여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프레온(Freon) 가스

오존층파괴 원인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염화불화탄소(CFCs)에 대한 일종의 상품명으로 1930년대 미국의 듀폰사에서 개발하여 상품명으로 붙인 것이 오늘날 프레온이란 이름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II. 용어 해설

▣ 플랑크톤(Plankton)

물 속을 부유하는 미세한 생물의 총칭.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다. 어류등의 먹이가 되며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맨 아래 부분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 하수처리법

일반적인 처리법으로는 하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을 스크린이나 침사지에 의한 물리적방법으로 제거하고, 다음에 용해성의 불순물을 미생물의 힘을 빌어 침전 분리시키고, 상등수는 염소소독 후에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하며, 하수처리시 나오는 오니는 따로 매립한다. 그 밖에 침강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응집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의 성질이나 처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가 쓰이고 있다. 하수 처리법의 기본적인 과정을 나타낼 때 최초 침전 후에 방류하는 처리를 1차 처리라고 말하며, 다음에 활성오니법이나 살수여상법등의 생물 처리를 가한 처리를 2차 처리라고 말한다. 더욱더 수질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는 3차 처리를 행한다.

▣ 할론(Halon)

오존층파괴 원인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염화불화탄소 중 브롬을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을 특히 할론으로 부름. 염화불화탄소(CFC)보다 오존파괴지수가 크고 주로 소화기에 많이 사용된다.

▣ 해양생태학(Marine Ecology)

해양의 미생물, 플랑크톤, 해조류, 어류 등의 분포, 유기물 생산이나 물질순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생물의 생식장소에 따라 해양, 하천, 삼림, 초원, 도시 등으로 구분할 때 해양생태학이 분류된다.

▣ 현지내 보전(in situ Conservation)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의 보전과 이들의 자연서식지내에서 종의 적절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서의 보전. 유지 회복을 말한다.

▣ 현지내 상태(in situ Condition)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 현지의외 보전(ex situ Conservation)

천연 서식지 밖에서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전. 자연계에서 종의 멸종이나 유전자원에 대한 보험정책을 제공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종에 대한 회복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공급된 종이 도입된 후에 재도입되어 유용한 동식물 물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식하는 좋은 방법임. 특히 농업에서 필요한 식물이나 자연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재배식물에 중요하다.

II. 용어 해설

▣ 협약이행 보조기관(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협약이행보조기관은 발 그대로 협약상의 의무 이행 담보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 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효과적인 협약이행상황 평가 및 검토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이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와 함께 폐수의 유기물 함유도 측정을 위한 중요한 척도이다. COD도 BOD와 마찬가지로 폐수내의 유기물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얼마만큼의 산소가 화학적으로 소모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크게 되면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오염이 심하게 됐음을 나타낸다. 검사가 단시간에 가능하므로 오염의 개략치를 추정하는데 많이 쓰인다. COD시험에 사용되는 산화제로는 중크롬산칼륨($K_2Cr_2O_7$)과 과망간산칼륨($KMnO_4$)이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과망간산칼륨의 산소소모량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Environment Management)이란 기존의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을 환경분야에 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환경관리를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경영체제는 환경경영의 구체적인 목표와 프로그램을 정해 이의 달성을 위한 조직,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물적인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ISO에서는 환경방침의 개발, 시행, 달성, 검토,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조, 활동계획, 책임, 관행, 절차, 과정 및 자원을 포함하는 전반적 경영체제를 정의하는 규정한다.

■ 환경(Environment)

국제환경법 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은 찾기 힘들다. 초기 국제환경문서등에서는 그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이해하였으나 최근의 국제환경문서등에서는 환경을 폭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선언은 원칙 2에서 “대기, 물, 대지. 동식물 및 특히 자연생태계의 대표적인 것을 포함한 지구상의 천연자원”이라 하였으며 1985년 유럽공동체의 지침(Directive 85/337)은 “물, 공기, 흙 그리고 이들 요소 상호간의 관계 및 모든 생물 유기체와 이들의 관계”라고 하였고 1992년 월경수로 및 호수보전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boundary Watercourses and Lakes)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물, 식물, 토양, 대기, 수질, 기후, 경관, 역사적 기념물 또는 기타 물리적 구조물 등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한다면 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대지, 생물적 다양성 및 그 구성 요소와 동시에 에너지, 소음, 진동, 방사능 등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요건으로 인간 삶의 조건에 해당하는 문화지 및 문화적 구조물을 포함한 일체의 상태”로서 국내법상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인간의 존엄, 복지를 유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생존권 자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으로 권리에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수준으로서의

II. 용어 해설

권리를 포함한다. 국제환경법에서 개개인의 환경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많지 않으나 1998년 6월 25일 채택되어 2001년 10월 30일 발효된 알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제1조 목적에서는 환경권을 현재와 미래세대의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환경에서 살 권리(the right of every person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o live in an environment to his or her health and well-being)라고 규정하고 있다.

■ 환경마크(E-mark)

환경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정 마크를 말한다. 저공해 상품에 붙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알권리(right to know)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저공해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시행 중이며, E-mark, Eco-마크라고도 한다.

■ 환경비용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환경비용의 내부화”라는 개념은, 천연자원의 활용, 오염, 쓰레기 발생, 소비, 폐기 및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품생산 및 사용의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s of production and use of a product)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비용의 내부화는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중 하나이며, 환경경제학의 초점이 되어 왔다. 동 원칙은 자원의 가격결정,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적 수단 사용, 환경비용과 이익계산, 환경회계방법(green accounting methods)등과 같은 분야에서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의 토대가 된다.

■ **환경상계관세(Eco-duty)**

각 나라마다 상이한 환경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경쟁력의 차이를 상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이루려는 목적의 상계관세제도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높은 환경기준이 경쟁력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적정 상계관세율 산정의 어려움, 환경주권의 침해 위험성 등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는 환경과피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EIA 과정은, (i)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회피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고려토록 하고, (ii)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제안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이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강물 채취사업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 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국제환경법 상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은 찾기 힘들으나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을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물질이나 에너지를 환경에

II. 용어 해설

유입함으로서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쾌적한 환경의 정당한 사용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주는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스톡홀름선언에서는 환경해악으로 물, 대기, 지구 및 생물이 위험한 단계에 이른 오염, 생물권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크나큰 또 바람직하지 않은 혼란, 다시없는 자원파괴와 고갈 및 인공의 환경 특히 생활환경, 노동환경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해악을 초래하는 결함이라고 하고 있다.

■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

폐쇄 순환계의 자연계에는 대기, 물, 토양등이 순환장소로써 작용하고 환경사이클을 형성한다. 이때 생물은 매체로서 움직이며 일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화학적 분해작용과 상호사이클의 균형이 보존된다. 이와 같이 자연계는 물질을 환원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보존하고 또 자원을 재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양적으로 취한 것을 환경용량이라 정의한다.

■ 환경의 유한성(Limited Environment)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면 환경용적을 초과하여 인류 및 생물의 생존이 위기에 봉착한다는 견해. 오염물질이 방출되어도 자연은 자정능력으로 이를 능력의 한계까지는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 넘으면 공해, 환경파괴로 표면화되고 여기에 더욱더 오염이 진행되면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로 나타나 사회문제가 된다. ‘환경의 유한성’은 ‘환경용량’과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황사현상(Yellow Storm)

황사현상은 몽고 및 중국 대륙의 사막지대와 황하 강 유역의 황토 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여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는 주로 봄에 발생하고 있다. 황사 현상은 과거에서부터 존재해 왔다. 황사발생에 관한 역사적 최초 기록은 신라 아달라왕 21년(174년)에 雨土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황사라는 용어는 1954년 기상청에서는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중국의 산업화와 삼림개발로 인한 토양유실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사막 주변의 급속한 사막화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발원지에서 배출되는 황사량을 100%라 할 때 보통 30%가 발원지부근 20%는 주변의 근거리 지역에 낙하하지만, 50% 정도는 한국, 일본 심지어 태평양 등 장거리로 수송되는 등 황사 현상은 초국경적환경오염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타클라마칸, 몽고고원, 만주 등), 황하중류의 황토지대(황토고원)에 저기압이 통과할 때 다량의 누런 먼지가 한랭전선 후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에 의해 상층으로 불려올라가 공중에 부유하거나 장거리이동 도중 지표에 낙하 하면서 생기는 시정장애 현상으로 발원지로 부터 고도 약 5.5Km에서 강한 편서풍 기류를 타고 약 3-5일만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하강기류 발생시 지표면에 낙하한다. 구성성분은 발원지에 따라 다르나 사막지대는 석영(규소), 황토지대는 장석이 주성분이며 알루미늄 과 철,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다. 발원지에 강수량이 적고 풍속이 강한 기상조건에서 강한 편서풍 기류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봄철(3-5월)에 발생한다. 인천지역은 특히 지리적으로 발생원에 가까워 다른 내륙지방에 비해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다. 황사가 미치는 영향은 먼지의 증가로 인해 호흡기

II. 용어 해설

질환 및 눈병의 유발 등 인체의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되며 농작물 및 활엽수의 기공을 막아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고 태양빛을 차단하고 산란시켜 시정악화로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그러나 중금속으로 인한 악영향은 거의 없으며 강우시에도 산성비에 의한 악영향은 없고 오히려 강우의 산도를 중화시키거나 알카리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 형평(Equity)

형평이란 공평한 정의로서 특히 국제환경법에서의 형평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 함의로 알려져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시 태양광의 작용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PAN 등 광화학 산화성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의 총칭임. 고정배출원에서의 유기용제 사용과 액체연료의 사용, 수송, 저장 및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의해 대기중으로 배출된다. 또한 VOC는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매와 화학 및 제약공장 그리고 플라스틱의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 등까지 매우 다양하며, 저비점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유기물질들이 거의 VOC이다.

III. 결 어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주요 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교적 많은 용어를 포함시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자의 능력 한계로 불과 200여개의 용어를 정리하는데 그쳤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200여개의 용어를 검토하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용어사용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용어가 협약의 원 의미와 다소 거리가 있게 해석된 것에 대한 새로운 용어 사용의 제안이다. 대표적인 것은 국제환경법의 지도 원리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이다. 본 용어는 브룬트란드(Brundtland)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되었을 때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사용되었는데 뒷부분인 sustainable development 만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 개념의 함의가 경제개발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발된 용어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만으로 표현하기에는 그 원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본 개념을 단지 경제개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영역에서의 정책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개발”이라는 용어보다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할 듯하다.

둘째,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여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용어에 대한 문제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점오염원(point source),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을 들 수 있다. 점오염원은 생활하수·산업폐수 및 축산폐수처럼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 오염의 원인이 발생하는 곳을 지칭하는데 이는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라 일반인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그 의미

III. 결 어

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고정오염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발생장소가 자동차처럼 이동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역시 이동오염원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soft law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soft law는 국제환경법의 새로운 법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구속력이 약하거나 없는 국제적 문서로서 향후 구속력을 갖게 되는 협약이나 국제관습법화 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 즉 국제법의 형성 또는 제정의 실질적 연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스톡홀름선언이나 리우선언 또는 기후변화협약 등의 골격협약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soft law를 우리나라는 연성법(軟性法)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성법이라 할 때는 헌법상 헌법의 개정이 용이함의 정도에 따라 경성 헌법 또는 연성 헌법이라 구분 할 때의 연성의 개념이 떠올라 마치 협약의 개정이 용이 한 법 내지 협약으로 이해되기 쉽다. 연구자 본인 역시 연성법을 대체 할 다른 용어를 제시할 수 는 없으나 향후의 과제로서 문제제기를 함에 그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관례적으로 사용해온 용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근대 법률은 대륙법을 일본에 의해 수용하게 되어 그 용어 뿐 아니라 체제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실제로 국제법이라는 용어 역시 1873년 미즈쿠리(箕作麟祥)가 번역하여 사용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불고 있으나 실제로 그 이전에는 중국에서는 1864년 이래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우리 역시 만국공법이라 불렀다고 한다. 여하한 사회 전 분야에서도 그러하듯이 법률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어법이나 용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본식 용어의 시용은 지양하고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 용어를 써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법에 한 하는 것은 아니나 국제법의 경우 일부 용어는 국내법의 전체적인 용어 사용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는 재판소라는 용어 대신 법원이라는 표현이 굳이 법원조직법을 들지 않더라도 공식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영역에서는 국제법원이나 상설중재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대신 court를 재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식 표현으로 가능한 빨리 우리식 용어인 법원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뿐 아니라 공해(公害)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용어 이므로 그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로 대체함이 필요하다. 현재 공해는 산업의 발달에 따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로 되는 문제 따위를 일컫는데 원래 이 용어는 민법상 공공방해(公共妨害)의 약자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의미를 살려 환경법에 있어서는 공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용어 뿐 아니라 문장 역시 지나치게 긴 경우 원 의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자의 순화라는 차원에서 분절하여 해석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뿐 만 아니라 지나치게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혹 국제법조약의 해석을 국제법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맡기는 경우 국제법의 일반용어보다 해당 분야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조약의 국내 정착 과정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의 양자의 협력이 공히 요구된다. 용어의 순화 또는 개선의 노력은 국제법 용어의 일반해설서 또는 외국의 예와 같이 국제법 백과사전으로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 용어집 또는 국제법 백과사전은 국제법학계의 숙원사항이

III. 결 어

기도 하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능력상 극히 제한된 수의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용어를 연구하였을 뿐이다. 추후 많은 유능하신 국제법학자들의 노력으로 국제법 백과사전이 발간되기를 기원하며 본 줄고가 향후의 연구 작업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고자 한다.

《부록 : 용어해설 색인》

국제환경법 용어해설 색인

■ 것담(Gut Dam) 사건	13
■ 고정오염원(Point source)	13
■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	13
■ 공공참여의 원칙(Public participation principle)	14
■ 공해(Public nuisance)	15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15
■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15
■ 국가책임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16
■ 국경간 환경영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in a Transboundary Context)	17
■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 IUCN)	19
■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21
■ 국제환경법의 분야	21
■ 국제환경법의 특성	21
■ 국제협력의 원칙	22
■ 그린라운드(Green Round)	22
■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	23
■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24
■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및 교토의정서	24
■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	25
■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26

■ 녹색 GNP(Green GNP)	26
■ 님비(Nimby) 현상	26
■ 다이옥신(Dioxin)	27
■ 대기오염	29
■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29
■ 대세적 의무(erga omnes)	30
■ 동경 선언 1994(Tokyo Declaration 1994)	30
■ 동물실험(Animal Experiment)	31
■ 라누호(Lanoux lake) 사건	31
■ 런던 스모그 사건	32
■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33
■ 로마클럽	34
■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	35
■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Harmful Chemicals & Pesticides)	35
■ 리우선언(Rio Declaration)	36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38
■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39
■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40
■ 미나마타 병	43
■ 미세먼지(PM-10)	45
■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또는 marketable permit)	45
■ 바이오 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47
■ 배출부과금 제도	47

■ 보팔사건(Bophal Case)	48
■ 보호지역(Protected Area)	50
■ 본(Bonn)협약	51
■ 사막화(desertification)	51
■ 사전배려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52
■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on Principle)	56
■ 사전통보동의(Advanced Informed Agreement : AIA)	56
■ 산림원칙(Forest principles)	57
■ 산성비(Acid rain)	58
■ 생명공학(Biotechnology)	58
■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or Biodiversity)	59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59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61
■ 생물재해(Biodisaster)	61
■ 생물학적 방제(Biological Control)	61
■ 생물학적 변환(Biological Conversion)	62
■ 생물학적 봉쇄(Biological Containment)	62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62
■ 생태계(Ecosystem)	62
■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63
■ 생태계 안전성(Ecosystem Safety)	63
■ 생태계 안정성(Ecosystem Stability)	64
■ 생태관광(Eco-Tourism)	64
■ 생태적 재해(Ecological Disaster)	64
■ 생태학(Ecology)	64
■ 서식지(Habitat)	65
■ 세계 환경의 날	65

■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65
■ 세계보건기구(WHO)	66
■ 세계자연보호기금(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66
■ 세라필드 핵발전소 사건(Sellafield Mixed Oxide Plant)	66
■ 소음(Noise)	71
■ 스모그(Smog)	72
■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	72
■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72
■ 슬러지(Sludge)	74
■ 습지(wetlands)	74
■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74
■ 아황산가스(SO ₂)	76
■ 알데히드	76
■ 에콜로지 운동(Ecological Movement)	76
■ 엘리뇨(El Nino)	77
■ 연성법(Soft Laws)	77
■ 염화불화탄소(CFC : chloro fluoro carbons)	78
■ 예치금제도(deposit refund system)	79
■ 오고니(Ogoni)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결정	79
■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3P Principle)	80
■ 오존(Ozone, O ₃)	81
■ 오존경보제	81
■ 오존층(ozone layer)	81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82
■ 오존파괴지수	82

■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83
■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제도(Tradeable emission permits)	84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	84
■ 위험성(Risk)	85
■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85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85
■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86
■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87
■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88
■ 유전자(Gene)	88
■ 유전자교환(Gene Exchange)	88
■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	88
■ 유전자원 원산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89
■ 유전자원 제공국(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89
■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89
■ 유전자은행(Gene Bank)	89
■ 유해(Hazard)	90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90
■ 의제 21(Agenda 21)	91
■ 이동오염원(non-point source)	92
■ 이타이이타이병	93
■ 이황화탄소(CS ₂)	93
■ 인간(Human)	94
■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94

■ 자연(Nature)	94
■ 자연보전(Conservation of Nature)	95
■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95
■ 자연주의자(Naturalist)	96
■ 자정작용(Self-furification)	96
■ 재활용(Recycling)	96
■ 저개발(Under-development)	96
■ 적조현상	97
■ 제품부담금(product charge)	97
■ 종(Species)	97
■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	98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98
■ 지구의 날	99
■ 지구환경 모니터링 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 GEMS)	100
■ 지구환경금융(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100
■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100
■ 지속가능한 개발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101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Sustainable products & consumption patterns)	102
■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102
■ 참치 · 돌고래 사건(Tuna-Dolphin 사건)	103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net Mechanism)	104
■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104
■ 초국경환경책임	105
■ 초국경피해 손실분배 가원칙(Draft principles on the allocation of loss from transboundary harm arising out of hazardous activities)	107

■ 초국경피해 예방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109
■ 총량규제	112
■ 트래픽(TRAFFIC International)	112
■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	113
■ 폐 놀	115
■ 폐기물예치금제도	115
■ 프레온(Freon) 가스	115
■ 플랑크톤(Plankton)	116
■ 하수처리법	116
■ 할론(Halon)	116
■ 해양생태학(Marine Ecology)	117
■ 현지내 보전(in situ Conservation)	117
■ 현지내 상태(in situ Condition)	117
■ 현지외 보전(ex situ Conservation)	117
■ 협약이행 보조기관(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118
■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118
■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118
■ 환경(Environment)	119
■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119
■ 환경마크(E-mark)	120
■ 환경비용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120
■ 환경상계관세(Eco-duty)	121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21
■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121
■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	122
■ 환경의 유한성(Limited Environment)	122

《부록 : 용어해설 색인》

■ 황사현상(Yellow Storm)	123
■ 형평(Equity)	124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	124